

##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모니터링·평가 방안

한 상 욱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 hansw@cni.re.kr

본 연구는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의 시행에 대응하여 모니터링과 합리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CONTENTS

1. 배경 및 목적
2. 모니터링·평가 개념 및 주요 내용
3. 모니터링·평가 사례 검토
4. 충남 균형발전사업 모니터링·평가 방안

### 요약

-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충남의 균형발전사업 모니터링, 평가와 관련한 종합적·객관적인 평가체계는 마련을 목적으로 함
- 모니터링은 계획 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잦은 사업변경, 공기 지연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진행함
- 평가는 균형발전사업의 목적 대비 사업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측정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목표 도출된 표준을 정하고, 계획과정, 집행과정, 운영관리 과정을 평가를 시행함
- 충남의 균형발전사업 모니터링·평가를 위해서는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하고, 각 단계별 평가를 체계화하며, 평가요소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사업효과성 제고를 독려 필요
- 평가시에는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평가합이 바람직

# 01 배경 및 목적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저발전 시군(9개)을 대상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임
  -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에는 2021년부터 85건에 6,824억원을 투입 예정
- 제1단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목표 달성도, 운영관리 미흡, 주민의 역량 제고 부족 뿐만 아니라 사업 규모에 견주어 성과에 대한 불편한 시각도 존재함
- 「국가재정법」 제8조<sup>1)</sup> 및 제8조의 2에 근거하여 정부의 각 부처는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등을 통해 재정사업의 성과지표와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있음
- 충청남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자율적인 사업 평가가 필요하지만, 사업집행, 관리, 성과·평가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였던 점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 최근 2019년에 제1단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
- 제2단계 제1기사업의 추진에 맞추어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 마련이 시급한 바, 현재 승인된 개발계획 85건을 대상으로 사업시행단계, 사업이후 단계 등에 대한 균형발전사업의 합리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1) 국가 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영), 국가재정법 제8조의 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 02 모니터링, 평가의 개념 및 주요내용

### 1. 모니터링

- 모니터링은 대상의 변화를 감시하고, 변화 내용을 분석하여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 이를 관련자에게 제공하는 제반활동을 말함<sup>2)</sup>
  - 모니터링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 방법, 주체, 기간등이 명확하여야 함
- 세계은행(World Bank)은 모니터링을 사업추진과정에서 수행되며, 사업계획과 사업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함
- 이를 자세히 말하면, 모니터링이란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의 과정 평가 중 하나로서 주요 내용이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계획 중에 제시하였던 목표 달성 정도에 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일련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

2) 이종렬 외(2003). 국토이용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1) 모니터링 필요성<sup>3)</sup>

계획 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관리

- 재정투자사업은 사업시행주체(하급기관)와 관리감독주체(상급기관)이 다르고, 관리감독기관은 재정투자사업의 목적에 맞추어 사업시행주체(하급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된 일련의 약속을 준수하고, 공정, 공중, 재원 등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
  - 특히, 균형발전 개발계획상 내용의 구체성 미흡, 추진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시 공기 지연, 사업 변경 등으로 인한 목표 달성 어려움을 노정
- 또한 관리감독주체는 사업실행주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문제점, 해결과제, 효율적 방법등을 다른 사업지구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도움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

-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과정, 완료 후 일정기간 모니터링이 필요
- 모니터링 결과를 익년도 및 차기 정책사업에 반영하는 일련의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사업의 완결성을 제고
  - 특히, 결과지표로 나타나는 결과 및 파급효과 측정을 위해서는 수년간에 걸친 모니터링이 필요

짚은 사업변경,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등을 절감

- 일반적으로 모니터링을 추진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행정비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오해하고, 형식적이거나 집행률에만 중점을 두는 사향으로 인식
- 사업추진과정상의 모니터링은 관리를 포함하여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컨설팅 등을 동반하여 수행한다면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목표 달성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함
  - 최근 중앙부처에서는 모니터링 업무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

3) 모니터링은 계획단계를 포함함

## 2) 모니터링 추진방법

관리감독 주체(상급기관, 중앙부처, 시·도)은 모니터링 전담조직, 방향, 항목 등을 구성·운영

- 관리감독 주체는 모니터링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며, 전담조직은 사업의 특성에 부합토록 전문가로 구성하며, 균형발전사업과 같이 종합계획 성격에 있어서는 그 특성에 부합토록 다양한 전문가가 30명 내외로 참여
  - 지역개발, 경제, 건축, 문화 및 관광, 환경공학 분야의 전문가 약 30인 내외로 구성
- 모니터링 방향, 항목 등 관련 제반사항을 관장
  - 중앙부처의 경우 사업목적에 맞추어 별도의 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방식이 일반적
- 각 시·도별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조직을 별도로 구성·운영
  - 모니터링 시행 지침에 근거하여 계획수립, 사업추진과정을 모니터링

사업실행주체(하급기관, 시·군)은 별도 조직이 모니터링 업무 수행

-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사업시행주체인 시군과 연계하되, 각 사업별 시행주체와 별개의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 이러한 사유는 사업별 관계자가 모니터링을 시행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에 기인함
- 모니터링 대상은 계획된 건축물·시설물 등의 물리적 사업, 역량강화 등의 소프트사업을 대상으로 함

## 3) 모니터링 항목

사업목적에 맞는 항목을 별도로 작성

- 일반적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부문을 그룹핑하고, 이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일정기간동안 모니터링함

소득사업, 민간 운영사업의 경우는 모니터링 내용을 강화하여 시행

- 소득사업, 완료 후 민간 운영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이 세세함
  - 건축물·시설물의 규모의 적정성, 기자재·설비의 적정성
  - 운영 담당자의 역량, 자격 요건, 전문적인 식견·경험 보유 여부
  - 수익의 배분에 대한 과정의 투명성, 갈등유발소지 가능성
  - 사업 완료 후 장기간 동안 운영 가능성, 시설물 감가상각 대책, 유희화 가능성

#### 환경 관련 분야의 모니터링은 전문적·장기적측면이 고려된 항목을 설정

-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경관, 생태환경, 자연 상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모니터링을 시행
- 사업중에는 전반적인 상황변화를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자연환경상, 동·식물상·하천 수질·수량, 대기 등의 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등을 모니터링
  - 각종 공법 사용시 환경 배려 공법의 적정성 등

#### 주민 역량강화와 관련된 모니터링은 운영관리·지속가능성 중심으로 강화

- 일반적인 교육사업으로는 주민 역량강화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상황인식하에 운영관리가 전제된 지속가능성 측면의 모니터링이 강화 추세
- 주민역량강화사업은 현장 상황을 수렴한 변동성이 크고, 이를 반영한 진화단계별 모형 적용이 필요
  - 사업 목적 대비 역량강화 수행방법의 적정성
  - 역량강화 사업 추진 세부 방법의 적정성
  - 예산집행의 적정성
  - 역량강화 교육 후 현장 투입 가능성

### 4) 모니터링 방법 및 결과 반영

#### 모니터링 방법은 사업의 성격, 규모에 따라 다양

- 계획단계의 모니터링은 전문가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업추진단계의 모니터링은 전문가 포함하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자, 사업의 수혜자 등이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추세

#### 모니터링 결과는 익년도 사업추진·유지관리에 반영

- 모니터링 결과는 익년도 사업 추진에 반영하며, 사업 완료시점 전에는 건축물·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적극 반영
  - 연도별 모니터링 결과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익년도 예산 등에 인센티브, 패널티를 시행
  - 모니터링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높거나 현장에 확산시킬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 제안

## 2. 평가

### 1) 평가 개념 및 목적

- 균형발전사업은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부문의 사업평가란 행정관리의수단, 서비스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 정확하게 서비스가 전달되는지, 적절한 서비스인지, 효과적인지, 혹은 효율적인지를 사정하는 것을 의미함(한상욱,2009)<sup>4)</sup>
- 즉, 공공부문의 사업평가는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피드백 가능한 유용한 정보를 창출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음(황한철, 2007)<sup>5)</sup>
- 평가의 목적은 공공차원의 해결이나 조정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이나 개선대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며, 그 과정은 일반적으로 크게 종합분석과 평가의 2단계로 이루어짐(이주용, 2011)<sup>6)</sup>
  - 대상사업의 투입에서부터 추진과정, 산출 및 성과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전주기적 과정 전체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의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 유용성 등을 핵심요소로 하여 평가하여야 함(김경량 외, 2005)<sup>7)</sup>
- 따라서, 평가<sup>8)</sup>는 사업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측정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며, 목표로 도출된 표준을 정하고, 계획과정, 집행과정, 사후평가를 포괄하는 개념임
- 과거의 평가는 평가의 개념 규정을 목표 설정에 따른 최종 산출물의 달성정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을 동시에 파악하는 등 그 폭이 확대되는 추세임
  - 이를 사업추진과 정책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동태적 과정으로 보고,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집행과정을 모두 포괄함

4) 한상욱(2009)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개선방향, 워크숍 자료,

5) 황한철(2007), 농촌개발사업의 추진실적 평가항목 선정 및 가중치 산정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제13권 제2호,p19

6) 이주용(2011), 장류적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평가 지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7) 김경량 외 2(2005),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간평가체계 개발, 한국농촌계획학회지 제12권 12호,

8) 일반적으로 평가는 크게 사업평가, 프로그램 평가, 정책평가로 크게 나뉨

## 2) 평가 유형

- 일반적으로 평가 방법은 평가시기에 따른 유형, 평가 수준에 따른 유형, 평가 방법에 따른 유형으로 구분

사전적 평가(Pre-Implementation)는 집행전 계획단계를 말하며, 수행여부 결정하기 위한 타당성 중심의 평가

- 사업의 입안단계에서 사업 시행으로 나타날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평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내용이 타당성 분석임
- 사업의 영향을 미리 예측·검증하고, 실현가능성을 결정하는 방법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은 집행과정에서 수행되는 평가로 산출과 효과간의 관계를 분석

- 과정평가는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 자원, 활동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사업 추진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내용을 수정·변경하고, 이로 인한 사업의 중단·축소·유지·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활동을 말함
- 과정평가에서는 산출물의 도출과정, 개선 사항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직역량(Organization capability)이 강화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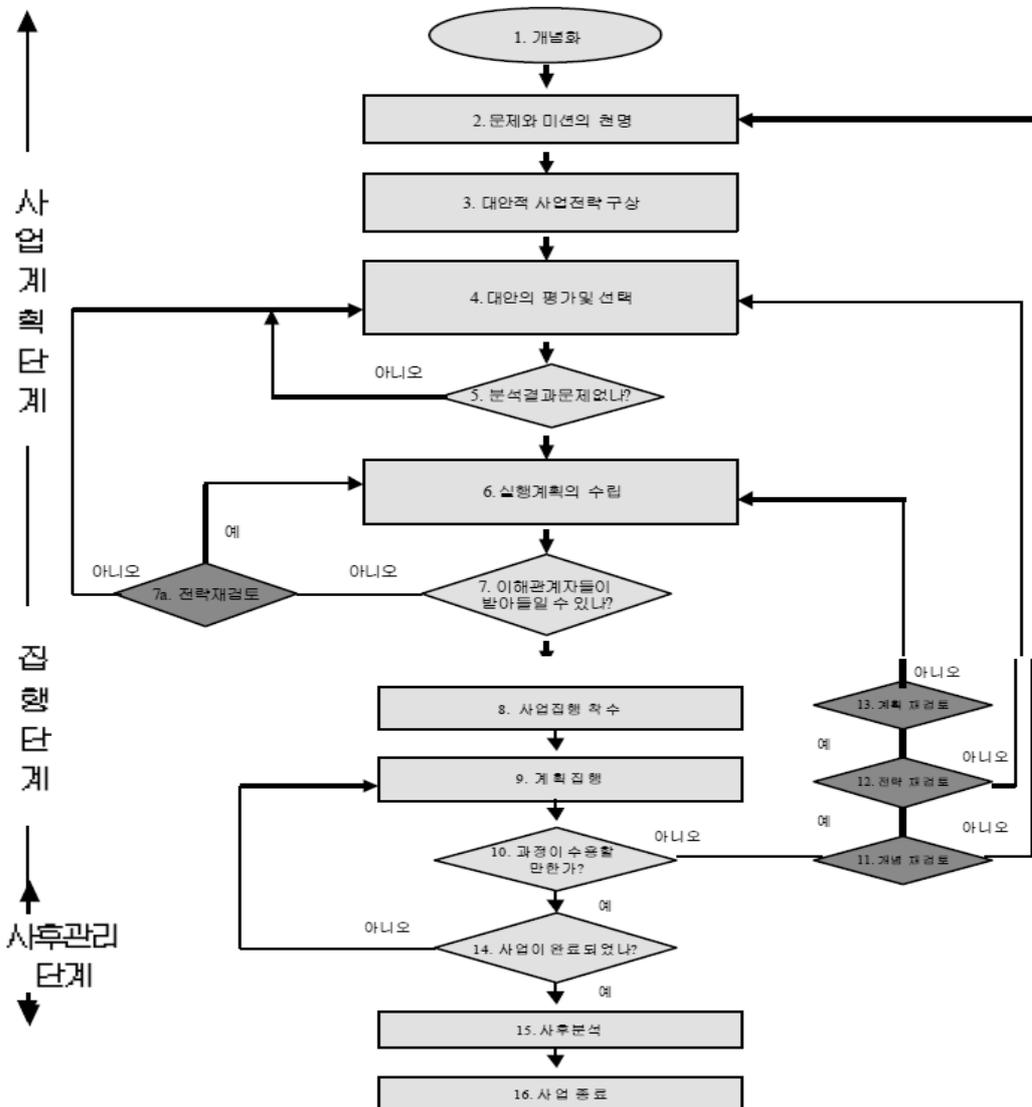
사후적 평가(Ex-post Evaluation)은 집행이후에 수행하는 평가로 사업의 실질적 효과와 영향, 가치와 결함을 평가

- 사업목표 달성이나 성취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목표 달성도 평가, 사업 추진 영향 평가가 해당
  - 목표 달성도라는 측면에서 산출평가(Outcome Evaluation)가 많이 활용되며, 산출평가는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ment)을 토대로 효과성을 평가함
  - 최근에는 수혜계층, 지역사회 역량 형성정도를 측정 난항으로 인하여 영향평가의 보조적 기능으로 수행하기도 함
- 사후적 평가는 사업의 계속, 확장, 축소 등과 같은 중요 의사결정에 활용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사업관리와 사업평가를 병행하여 추진

- 사업관리는 사업통제적 기법으로서 계획단계부터 집행, 사후관리의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모니터링, 중간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류하는 시스템을 말함
- 최근에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모니터링, 평가시스템을 시행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강함

사업 단계별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모형



자료 : Lewis, J.P.(1998), Mastering Project Management, NewYork:McGraw-Hill, p64

### 3) 평가 내용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에서는 사업평가기준을 적합성, 추진체계의 효율성, 사업효과성, 사업 유용성 측면에서 평가함

- 사업의 적합성
  - 정책방향, 사업계획 및 자원 투입의 내용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성 평가
- 추진체계의 효율성
  - 계획 및 투입자원대비 사업의 운영체계의 효율성 평가
- 사업의 효과성
  - 사업수행으로 얻어진 산출 및 성과내용이 공공차원의 목표를 달성도를 평가
- 사업의 유용성
  - 사업 성과에 대한 지속력 및 잠재력 추적 정도 평가

단계별 평가는 문제 정의, 측정, 분석과 판단의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전제하에 평가단계는 투입단계, 집행단계, 사후단계로 나누어서 평가(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sup>9)</sup>

- 투입단계에서는 문제의 정의, 이해관계 분석, 대안선택의 합리성, 계획의 충실성을 평가
- 집행단계에서는 계획적 집행 노력 정도, 사업 진척도, 모니터링 및 환류를 평가
- 사후관리단계는 목표달성도, 사업 효율성, 수혜인·고객에의 영향력 등을 평가함

---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9),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및 기법개발.

사업단계별 평가 주요내용(한상욱(2009))

구분		주요내용
투입 단계	문제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추진에 앞서 당면한 문제를 명확하게 확인했나?</li> <li>◦사업의 목표가 조직목표와 일치하는가?</li> </ul>
	이해관계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은?</li> <li>◦이해관계자들의 요구수준은?</li> <li>◦이해관계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나?</li> <li>◦사업의 미래수요는?</li> </ul>
	대안선택의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택가능한 대안들을 모두 검토하였나?</li> <li>◦각 대안의 타당성분석결과는?</li> <li>◦대안의 실행가능성은?</li> <li>◦집행상의 어려움은 없는가?</li> </ul>
	계획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목표가 명확한가?</li> <li>◦사업일정, 예산, 인력 등이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li> <li>◦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이 마련되었는가?</li> </ul>
집행 단계	계획적 집행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에 투입될 인적, 물적자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나?</li> <li>◦사업에 대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나?</li> <li>◦고객의 참여정도는?</li> </ul>
	사업진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일정대로 진척되고 있나?</li> <li>◦사업이 비용, 성과면에서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는가?</li> </ul>
	모니터링 및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모든 측면에서 모니터링 되고 있나?</li> <li>◦모니터링 결과가 사업팀에 제대로 환류되고 있나?</li> </ul>
사후 관리 단계	목표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완성된 산출물은?</li> <li>◦계획대비 실적비율은?</li> </ul>
	사업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실적단위당 소요자원의 정도는?</li> <li>◦사업이 시간과 비용을 초과하지 않았나?</li> </ul>
	고객에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지역경제적 효과는?</li> <li>◦사업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는?</li> </ul>

## 03

# 모니터링·평가 사례 검토

## 1.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sup>10)</sup>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전국 1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지역개발사업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농·산·어촌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인구유지 및 특화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임

### 1) 평가 체계

사업집행단계에서는 지자체와 농식품부, 시도 전문가 그룹에 의한 이원적 체제

- 지자체에서는 계획의 집행, 사업관리, 자율평가를 시행하고, 농식품부, 시도에서는 모니터링, 컨설팅을 담당함
- 모니터링은 일반농산어촌지역에 대하여 정기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
  - 상시모니터링시에는 현지 출장점검을 시행함

10) 농림축산식품부(202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발췌 정리

- 전년도 모니터링 결과 및 현장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지표, 결과지표 등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게 됨
  - 산출지표는 사업의 활동과 집행에 따라 나타나는 즉각적인 결과치를 말하며, 결과지표는 정책 수혜자에게 나타나는 변화치를 말함

모니터링은 추진체계, 계획 대비 내용 확인, 법제도적 준수여부, 제도개선사항 등을 점검

- 정기모니터링시에는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시모니터링을 시행하여 형지출장 점검 시행
  - 사업 추진체계구축 및 운영 상황
  - 사업계획과 실 사업 추진 내용간 교차 검토·확인
  -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
  - 사업추진상황, 제도개선 사항 등 발굴
  - 민원, 갈등, 감사 지적 등 처리 결과 확인

컨설팅은 성과목표 설정, 운영 미흡 사업지구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시행

-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목표 및 성과 목표 설정등을 중점 지원하며, 모니터링에서 사업추진 및 운영이 미흡한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시행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자체내 타 사업 및 타 시군과의 연계성
  - 사업추진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한 계획 수립 및 지원
  - 사업추진 상황, 운영관리 등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
  - 실현가능성 측면의 사업 성과목표 수정·보완
  - 사업 성과 극대화를 위한 실현가능한 대안 제시

## 2) 사업시행·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절차

사업비 집행기준은 크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하위 세부 항목도 규정하여 제시

- 사업비 집행시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국가지방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을 적용함

- 기능별·사업별 집행기준은 아래와 같음
  - ① 시·군은 기본계획 승인 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용역비, 부대비용 등을 집행 가능
    - 부대비용의 경우 총사업비의 3% 이내에서 편성하며, 기본계획 착수 이후 사업지원에 필요한 경비, 지자체 담당 공무원·주민 등의 교육, 주민위원회·전문가단 운영비(자문비 등), 지역역량강화사업 기획·설계과정에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시 사무공간 대여 등에 사용
  - ② 시·군은 기본계획 승인 후부터 시행계획 승인 전까지 건축물 설계비, 지역역량강화사업비,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용역비, 부대비용 등을 집행 가능, 그 외 사항은 시행계획 승인 이후 집행
  - ③ 시·군은 기본계획 착수 이후 핵심 시설 부지 등에 대한 용지매수 보상비를 집행할 수 있으나, 집행 전 농식품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집행하며, 용지매수 후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매입비용 일체는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처리
    - 부지 매입비는 농촌중심지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조성 총사업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생활SOC 시설, 도로, 주차장, 소규모 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용 부지를 지원 가능
    - \* 지원비율(국비 70%, 지방비 30%)에 따라 편성된 사업비로, 별도로 추가되는 지방비는 미포함
    - 용지매수보상 시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진행
  - ④ 지역역량강화사업은 기본계획 승인(또는 부분승인) 후 전체 지역역량강화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집행 가능, 잔여 사업비는 시행계획 승인 후 집행
  - ⑤ 주민 대상의 해외 선진지 견학은 사업기간 중 1회 10명 이내로 직접경비 중 50% 이상 자부담 시 가능
    - \* 항공료,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을 의미하며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정산단계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

- 시·군(민간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보조사업 정산보고서<sup>11)</sup>를 제출
  -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사업완료보고서 작성하여 시·도(시·군)와 농식품부에 제출
  - 동시에 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에 반드시 업로드 등 현행화<sup>12)</sup>

11) 부록 참조

12) 위반 확인시 신규사업 평가 시 감점 등 패널티 부여

-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또는 사업완료보고서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될 시에 보조금액 확정 통지
  - 정산보고서의 내용,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 등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보조금액을 확정된 후 통지
  -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만일, 민간 보조사업자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3) 사업의 변경

시군은 사업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한 사업 변경을 요청

-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기본계획·개발계획의 변경시 입증자료를 제출
  - 시군은 기능별 또는 사업별 세부사업비 총액을 변경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변경내용과 사유, 변경 원칙 충족 입증 자료 등을 시·도에 제출하여 사업비 변경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변경 원칙

- ◇ 변경 주체: 시장군수 \* 승인 : 시도지사 또는 농식품부 장관 / 사전검토: 시도지사
- ◇ 변경 원칙
- ① 기본계획 대비 총 국비지원액의 50% 이상\* 변경 시: 시도지사 사전검토, 농식품부 승인  
 기본계획 대비 총 국비지원액의 30% 이상 50% 미만\*\* 변경 시: 시·도지사 사전검토·승인  
 \* 기능별 또는 사업별 국비 증감액의 합(절대값)이 총 국비지원액의 50% 이상  
 \*\* 기능별 또는 사업별 국비 증감액의 합(절대값)이 총 국비지원액의 30% 이상 50% 미만  
 ※ 1개 기능 또는 사업 내 총 사업비(국비 기준)의 증감액 총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협의 불필요.  
 다만, 시행계획 최초 수립 시에는 반드시 시·도지사 사전검토 후 승인  
 ※ 여러 차례 변경 발생 시 변경 시마다 발생한 국비 증감액의 합(절대값) 기준으로 산정한 변동률을 누적하여 변경 원칙을 적용
  - ② 사업비 확보·집행 현황 및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계획 제출  
 (사업비 명세서, 공사용역 등 발주계약방법 및 일정 등 집행계획 증빙자료 포함)
  - ③ 중심지 및 배후마을 주민 대상 의견수렴 결과(사업 준공 후 주민 주도로 서비스를 공급·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 ④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재검토 요청계획(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⑤ 기타 타 법령에 따라 부지 변경 시 필요한 사항 이행 여부 등

- 시·도는 다양한 조건, 사업비 변경 내역에 따라 변경
  - 검토 조건 : 사업목적 충족 여부, 법적 제약 유무, 사업계획 변경 필요성·적절성, 기한 내 사업 완료 가능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 가능성
  - 사업비 검토 조건
    - \* 기본계획 대비 총 국비지원액의 30% 이상 50% 미만 변경 시 시도에서 시·군에 사업비 변경 승인을 통지
    - \*\* 기본계획 대비 총 국비지원액의 50% 이상 변경 시 시·군 제출 자료와 시·도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사업비 변경 승인을 요청

농식품부는 시도의견 참고·검토하여 변경하고, 시군은 시행계획 고시

- 농식품부는 시·도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변경 필요성·적절성,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 가능성 등을 판단한 후 시·도를 거쳐 시·군에 사업비 변경 승인 여부를 통지
- 시·군은 사업비 변경 승인을 통지받은 후 수립 또는 변경한 시행계획을 고시한 후 사업에 착수
  - 고시 전 해당 변경사항과 연관된 사업비 집행 금지

타 사업과의 연계(시설물 복합화 등)시설은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

- 변경 조건
  - 연계 사업의 소요예산 내역서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 내역서와 구분하여 작성
  - 연계 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예산(국비·지방비·자부담 등) 확보 현황자료(예: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지자체 예산부서 공문, 자부담 납입증명서 등) 제출
  - 사업간 연계로 생활SOC 시설을 복합화하여 조성하는 경우 준공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시·군의 기여 방안(예: 시설 유지관리비용 지원)
- 절차 : 타 사업과의 연계(시설물 복합화 등)으로 사업대상지 및 사업비 변경 발생 시 시·군은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를 이행

#### 4) 계획 협약 체결로 책임성 강화

사업관련 이해관계 주체간 목표 공유 및 상호 협업 및 지원 목표로 함

- 시군은 계획협약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시전문가를 적극 활용 유도

- 사업계획(기본계획)의 핵심 사업내용 및 성과목표 위주로 작성
- 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기 시행지구나 예정지구 중 신활력 플러스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연계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
- 유사 중복사업의 방지 등 통합적 개발을 위해 사업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연계사업 및 후속사업 발굴
- 계획협약안 작성 시에는 중계단 등 외부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

### 협약 체결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군과 협약을 체결

- 협약체결은 농식품부는 시군별 기본계획 내용, 중계단 자문 결과, 지자체의 추진단 지원 내용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시군과 계획협약 체결
  - 타 부처 협이가 필요한 사항은 균형위 등과 협의하여 진행
- 협약 조정은 협약체결 후 사업 추진환경 변화 등으로 협약 내용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에는 조정 가능

## 5) 모니터링 평가

### (1) 분기별 모니터링

모니터링보고서는 분기별로 시행하며 사업추진내역을 업데이트

- 지구별 시행계획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을 분기별로 업데이트 하며, 주체별, 사업별로 지속 업데이트

추진주체별 활동실적에 일반적인 실적외에 주민 대상 홍보실적을 포함

- 주체별 추진내역에는 PM단 활동실적, TFT(행정) 활동실적, 주민주도 활동실적, 주민대상 홍보 실적, 마을 경영지원 투자실적 등 실행내역을 기재함
  - 일반적인 주민주도 활동실적에는 추진위원회 회의, 추진위원회 분과 회의를 기본으로 하며, 주민공동체 네트워크 활동을 대상으로 함
  - 주민대상 사업 홍보에는 소식지, 서포터즈, 설문조사, 마을 행사등을 포함함

기추진 내역은 추진결과를 정리하며, 특히 SW사업은 세부내역별로 매우 구체적임

- 발주하여 완료된 용역사항은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제출
  - 세부내역에는 용역기관명, 용역기간, 용역비, 기관 선정방법, 주요 추진실적 등이 해당 됨
  - SW시설의 경우에는 세부추진실적을 운영주체 교육, 운영주체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마케팅, 창업지원, 주민대상 행사, 사회적 실험(T·B)등 세부내역별로 추진실적을 제시함

농식품부 전문가(중앙계획지원단)를 중심으로 매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

- 농식품부 중계단을 중심으로 매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계획협약 내용 조정 등 사업관리 강화

## (2) 연차별 실적보고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에 따라 연차별 실적보고서를 작성 제출

- 실적보고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 시군은 연차별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제출 보고서 내용은 개요,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성과 및 애로사항으로 구분됨<sup>13)</sup>
- 사업개요는 유형, 사업명, 위치, 인구·가구, 사업비, 사업기간, 담당자, 공사기간임
  - 담당자는 시군의 주무부서 담당자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장임
  - 공사기간은 기본계획 승인일, 시행계획 승인일, 준공(예정)일임
- 사업추진실적은 각 세부사업별로 기능, 착공년도, 준공년도, 추진상황, 공정율을 기재함
  - 공정율의 계획대비 지연시에는 지연사유를 기재
- 사업 집행실적은 재원별, 연도별 집행액, 실집행율을 기재함
  - 재원별로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별
  - 연도별로는 예산액,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 사업성과는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자율로 기재

13) 제시된 내용은 2015년 자료임

## 2. 도시재생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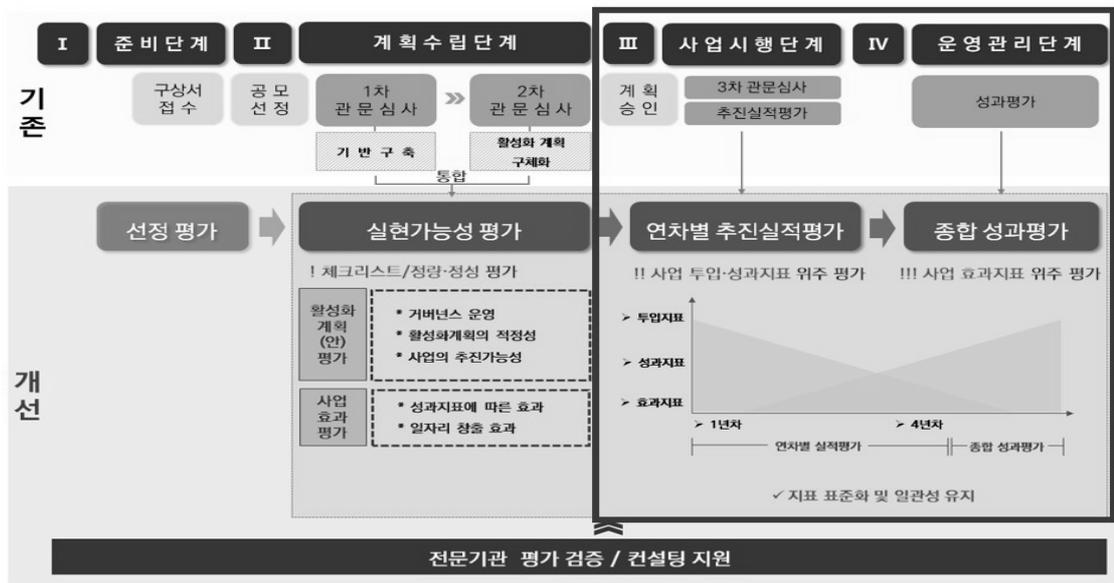
도시재생사업은 5개 유형으로 다양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재생사업은 경제 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형의 5개 유형을 추진중 임

### 1) 평가체계

- 도시재생사업은 차년도 사업의 개선·보완을 위해 매년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시행<sup>14)</sup>
  - 성과평가는 연차별 추진실적평가, 종합 성과평가로 구성
  - 과거에는 모니터링·사후평가의 관점에서 사업시행에 대한 관문심사를 진행(~2017년) 하였으나, 현재는 관문심사의 강화, 추진실적평가를 사업 투입·성과 지표 중심으로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로 통합하여 관리
- 평가는 연차별 평가와 종합성과평가로 크게 나뉨
  - 연차별 평가는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추진 전과정에 걸쳐 진행되는 단계별 모니터링을 말함
  - 종합성과평가는 사업추진 4년차 이후부터 종료시까지 기투입된 사업에 대해서 효과 지표 분석을 중심 평가와 사업종료 후의 효과와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후평가 및 피드백에 해당함

도시재생사업 평가체계



14) 모니터링 및 평가근거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제13조) -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제24조) - 평가 환류 및 점검계획에 의거함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자가진단과 외부평가를 병행 진행

- 모니터링은 자가진단, 추진과정 모니터링, 성과변화 모니터링으로 크게 나뉨
  - 자가진단은 주체의 자력재생역량 육성을 목표로 하는 자가진단,
  - 추진과정 모니터링은 중심지는 3년, 주거지는 2년시점을 기준으로 시행하며, 면담 및 현장조사를 시행함(서울시, 광역센터)
  - 성과모니터링은 외부평가위원을 중심으로 주어진 양식에 맞추어서 시행하고, 종합평가를 시행

서울시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 체계



자료 : 서울연구원(2017),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체계, p.35

## 2) 평가 지표 및 방법

정부기준에 맞추어서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성과지표를 설정

- 2018년 관계부처 합동 비전을 선포하고, 4개 정책목표에 근거한 주요 산출지표와 2개 결과지표를 제시

모니터링은 지표별 변화수준의 분석·평가방식으로 진행

- 모니터링 지표는 현장의 상황이 다르므로, 현장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개발한 지표를 기반으로 함
- 지표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연계하여 개발

- 주요평가 요인은 사회적 재생, 경제적, 재생, 문화적 재생, 선도거점 재생, 도시환경 재생의 5개영역으로 나뉨
- 서울시의 경우는 공통항목으로는 거버넌스 형성·운영사항, 시·구 협력정도, 주민·상인 재생사업 참여도, 마중물 예산 등의 집행 실적을 조사
  - 선택형 특화항목은 사업 유형별로 사업체 및 종사자수, 유동인구, 임대료, 자가변화 수준

도시재생사업 주요 성과지표

구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산출지표	지역혁신거점 조성 진행	250곳 이상 ('18~'22년) (복합기능 혁신공간 연평균 30여곳, 지역특화 사업 연평균 20여곳)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250개 이상 ('22년)
	도시재생대학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대학(200개 이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300곳 이상) 설치
	공공임대상가 공급	연 평균 20여곳('18~'22년)
결과지표	내몰림 예상지역의 상생계획 수립, 공공 임대상가 공급	100여곳 이상('22년)
	전국 쇠퇴지역	65.9%('16년) → 63%('27년)
	저층 주거지의 거주가구 주거만족도 제고	67%('16년) → 75% 이상('22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국회예산정책처, 도시재생 뉴딜 분석

세부사업 평가 지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구분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성과	세부 항목	목표지표	
사회적 재생	주민의식	자치조직 가입률 상인회 회원수 및 만족도	거주민 만족도	장소성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협의체의 구성 여부 주민회의 회수 및 참여자		복지서비스
	사회적 자본	범죄건수 인적자원 활용정도		접근성
	복지	기초생활수급자수	주민회의수	
경제적 재생	산업 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 수익 구조	주민회의 참여자수	
		공가수 빈점포수	기초생활 수급자수	
		주요지점 지가 및 임대료	주요지점 지가	
문화적 재생	창조사업 관련	창조사업 투자액	창조사업 투자액	지역적 특성 만족도
	지역 특성	지역적 특성 만족도		일자리 창출수
선도거점 재생	상권 활성화	빈점포 활용 신규 창업수	주요지점 통행량	
	가로활성화	주요지점 통행량	주거환경 만족도	
도시환경 재생	주거환경 개선	주택 개보수 건수 신규 주택수	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수	
	상가환경 개선	상가신축 및 리모델링 수		
	가로환경 개선	가로환경 만족도		

자료: 토지주택연구원(2018),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정보활용 방안 연구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투입수준, 목표달성 수준을 반영하되 사업지별 특성 반영하여 모니터링 진행

- 서울시의 경우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29개 공통지표와 유형별 상이지표를 시행
  - 공통지표는 모든 활성화지역에 공통 적용되는 기본적용지표
  - 상이지표는 지역별 활성화계획 수립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정

도시재생사업 주요 성과지표(서울시)

구분	시기	지표	세부항목	조사방법
함께 잘살고	우선 진단	상권활성화 정도	상권 역동성(창폐업률) 영업기간 중위수	통계자료
		유동인구	대중교통 이용자수 시간대별 승하차 패턴	통계자료
		앵커시설 방문객수		현장조사
	중장기 진단	인구, 가구구조	연령별 인구수 가구원수별 가구수 점유형태별 가구수	통계자료
		순인구 이동률		
		주택거래	㎡당 주택실거래가격 주택 실거래 건수	통계자료
함께행복 하고	우선 진단	건축물 변경 사항		통계자료
		기초생활인프라수	주차장, 공원, 공공체육시설 보육시설, 도서관(작은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현장조사
		지역거주 만족도		설문조사
		앵커시설 조성수		현장조사
	중장기 진단	앵커시설 이용도		설문조사
		신축허가건축물수		통계자료
함께 만드는	우선 진단	공동체 활동 참여도	주민설명회 참여자수 공동체 프로그램 수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자수 주민협의체 회의 참석자수	현장조사
		추진조직 역량	주민협의체 회원수 지역주민 상인 조직수 활동가수	현장조사
		공동체 활동 만족도		설문조사
		도시재생사업 참여도	주민공모사업수 소식지 등 홍보수단 확보수 지역축제수	현장조사
	중장기 진단	사회적경제조직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현장조사
		지역사회 소속감		설문조사

자료: 서울연구원(2017),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체계

종합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년마다 시행

- 서울시의 경우 종합평가는 자가진단, 추진과정 모니터링, 성과관리 모니터링에 맞추어 2년마다 수행
- 평가는 사업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평가위원회에 의해 자율적으로 시행

종합평가 항목(서울시)

모니터링 항목		주요내용	
자가진단	추진조직 구축 여부	주민협의체 구성원수, 운영회수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자수, 상근직 비율	
	교육 및 홍보 시행현황	교육회수, 지역 내 거주자 수 대비 참가자비율 홍보회수, (소식지, SNS 등)홍보수단 확보수	
	자체 도시재생 운영체계구축 정도	관 지원 종료 후, 지역주도 자력재생가능성 판단 추진조직 운영현황, 주민공모사업 제안건수· 참여도	
	KPI <sup>15)</sup> 변화 정도	도시재생 수행 전의 최초값 대비 현재값	
	KPI 달성 정도	KPI 최종 목표값 대비 현재값	
	성과지표 및 KPI외 영역의 변화 정도	도시재생 수행 전의 기타지표 최초값 대비 현재값	
추진과정 모니터링	주민상인	참여정도	인지도, 참여도, 체감도 중심
		변화인식정도	설문조사 1부에 해당하는 주민·상인 의견수렴 결과값
		자력재생기대정도	현장인터뷰 및 통합 워크숍 내용
	활성화 사업	사업의 타당성	활성화계획 작성시 고려된 활성화사업 수립 근거
		사업의 실현가능성	현장 인터뷰 내용
		사업수행 여부	자가진단에서 기록한 활성화사업 실시현황
		사업 수행 정도	현장인터뷰 및 통합 워크숍 내용
	활성화사업 변경시	변경사유	자가진단에서 기록한 활성화사업 수정 사항 현장인터뷰 및 통합 워크숍 내용
기존 계획에 미치는 영향			
변경내용의 가능성			
성과관리 모니터링	공통지표변화정도	지표정의서에 근거하여 산출된 결과값	
	변화가 발생한 원인	유의미한 변화가 모니터링에서 관찰된 경우, 그 변화와 도시재생 간의 연관성 분석	
	변화가 없는 원인	도시재생을 지속 수행하였음에도 유의미한 변화 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원인 분석	
	공통지표간 상관관계	공통지표 결과 값 분석을 통해 지표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 유무 검토	

자료: 서울연구원(2017),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체계

### 3.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sup>16)</sup>

- 통칭, 지역수요 맞춤형지원사업을 말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근거한 사업임
-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과 그 인근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함

#### 1) 평가체계

평가는 사전평가와 집행평가 2단계로 크게 구분됨

- 추진단계에 따라 사전평가와 집행평가로 구분되며, 사전평가는 실현가능성 검증,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로, 집행평가는 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 기반시설 사업 집행결과 평가임
  - 사전평가는 전문기관에 평가업무를 위탁
  - 집행평가는 지자체 자체 평가, 국토부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시행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구분	사전평가		집행평가	
	실현가능성 검증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	기반시설 사업 집행결과 평가
중점 평가	입지 적합성 계획충실성 등	모사업의 진척도 및 사업의 적절성 등	집행실적 및 착수사업 비중	집행 실적 및 사업관리 역량
평가 대상	개발계획 및 지구에 포함된 모든 사업	총사업비 100억 이상 500억미만 기반시설 사업	개발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	국토부 소관 국비지원사업
평가 시기	개발계획 및 지구 승인(변경) 신청시	신규사업예산 의견 제출 전 (2-5월)	당해연도 집행 완료 후 (3-7월)	당해연도 집행 완료 후 (3-7월)
평가 주기	개발계획 및 지구 승인(변경) 신청시	신규사업 예산 신청시	매년 (단, 개발계획 승인 2년후부터 시행)	매년
평가 활용	사업제척 및 조정	사업 착수시기 연기 및 규모 조정	사업조정 등	사업조정 및 컨설팅
평가 주체	국토부 (국토연 위탁)	국토부 (국토연 위탁)	지자체·국토부 (지자체 자체평가 → 서면심사·현지심사 → 평가결과 확정 → 평가결과 통보)	

자료: 국토교통부(2014), 지역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15) KPI : Key Performance Index

16) 성장촉진지역사업 중심

## 2) 평가 지표 및 방법

사전평가는 필수요건을 우선 진단하고, 통과/불통과 방식으로 검증하며, 정량·정성평가 병행

- 계획안에 대한 사전 실현가능성 검증에는 기본평가와 모사업평가, 기반시설평가로 크게 나뉨
- 각 평가분야에 있어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사업시행자별 적용여부를 제시
  - 기본평가는 입지적합성, 정책부합성을 평가함
  - 모사업에는 계획충실성, 사업추진가능성, 수요확보가능성, 사업적정성 등을 평가함
  - 기반시설사업은 사업 공공성, 연결성 및 중복성을 평가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시행자별 적용여부		
			지자체	민간	지자체 민간 공동
기본평가	입지 적합성	입지적합성	○	○	○
	정책 부합성	정책목적과의 부합성	○	○	○
모사업 (개발 사업)	계획충실성	사업의 구체성	○	○	○
		관계기관 협의 의견 반영 정도	○	○	○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여부	○	○	○
	사업추진 가능성	토지확보 용이성	○	○	○
		관계부처 소관 종합계획 반영 여부	○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요건 충족 여부		○	○
		사업시행자 투자 의향		○	○
	수요확보 가능성	이용객 및 입주 수요확보 가능성	○	○	○
		지역내 유사시설 개발·운영 현황	○	○	○
	사업 적정성	총사업비 산정규모 및 산정내역의적정성	○	○	○
		국비 기투자 및 관련 예산 확보 여부	○		○
		지방비 확보 가능성	○		○
		재원조달 현실성		○	○
	기반시설 사업	사업 공공성	기반시설사업의 필요성	○	○
연결성 및 중복성		타기반시설과 네트워크 형성 가능성	○	○	○
		인접 유사 기반시설과의 중복성	○	○	○

자료: 국토교통부(2014), 지역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집행결과평가는 개발계획 승인 2년 경과후 예산집행실적, 목표대비 착수사업 비중을 평가

-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 승인 2년 경과한 시점에 개발계획 내용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
- 기반시설의 사업 추진 전·후를 평가하며, 사업 타당성 평가, 집행결과를 평가함
- 추진방식은 지자체가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국토교통부가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를 시행
- 사업타당성 평가는 사업유형별, 시행자별 차별화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병행추진
  - 모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사업의 착수시기 및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
- 집행결과 평가는 예산의 집행실적, 사업관리 역량을 평가함
  - 예산 집행실적에는 예산 집행률, 사업공정률, 지방비 확보율, 민간투자액 확보율
  - 사업관리 역량은 추진조직 및 관리 역량, 갈등대처 역량을 평가함

지역개발사업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시행자별 적용여부		
			지자체	민간	지자체 민간 공동
모사업	모사업 진척정도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		○	○
		사업시행자 투자 의향		○	○
		토지확보 용이성	○	○	○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	○		○
	재원조달 가능성	국비 및 지방비 확보율	○		○
		재정 건전성	○		
		사업시행자의 부채비율		○	○
		사업시행자의 신용등급		○	○
기반시설 사업	사업적절성	유발교통수요의 충분성	○	○	○
		시설규모의 적절성	○	○	○
		국고지원 비용 적절성	○	○	○

자료: 국토교통부(2014), 지역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지역개발사업 기반시설 집행결과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시행자별 적용여부
재정조달 및 집행실적	예산집행률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평가
	사업공정률	계획대비 공정진행 정도	계획대비 공정진행 정도 평가
	지방비 확보율	지방비 투입 목표액 대비 실제 매칭액	지방비 투입 목표액 대비 실제 매칭액을 평가
	민간투자액 확보율	민간투자액 확보계획 대비 실제 확보액	민간투자액 확보계획 대비 실제 확보액을 평가
사업관리 역량	추진조직 및 관리 역량	사업추진 전담체계 구축 여부 및 운영 역량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구축 및 운영의 효율성을 판단
		자체 점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역량	주기적 점검 시스템 운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이 관리되고 있는지 판단
	갈등대처 역량	민원 등 대응, 조치 여부	민원 등 대응, 조치 여부를 파악하여 지자체의 갈등대처 역량을 판단
		문제사업에 대한 해결 노력 여부	문제사업에 대한 해결노력을 파악하여 지자체의 갈등대처 역량을 판단
		부진시 만회 노력	부진사업에 대한 만회 노력을 파악하여 지자체의 갈등대처 역량을 판단

자료: 국토교통부(2014), 지역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 4. 사례 검토 종합 및 시사점

사업 추진 단계별 평가를 체계화하고, 평가요소는 세분화 추세이며, 목표 달성 성과관리 강화

- 각 사업별 특성에 맞도록 사업단계별로 구분하여 평가지표, 추진방법, 평가주체 등 세부구성요소를 다르게 추진
- 사업의 평가 지표는 공통지표와 특화지표로 양분하고, 각 지표별로 세분화
- 계획-과정-성과의 일련의 과정에서 평가 내용은 계획단계에서 제시한 성과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평가·컨설팅을 추진
  - 도시재생사업은 매우 구체적임

평가의 목적은 평가결과에 근거한 인센티브·패널티 등을 통해 사업효과성 제고를 독려하기 위함이며, 분기별 모니터링과 연도별 평가를 시행하고, 자가진단을 시행

- 다년간의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경우 현장의 여건변화, 시행주체(공무원)의 변경, 지자체 장의 의견 투영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 대비 사업추진이 방향선회, 사업 축소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평가지표로 사용
-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에서는 사업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점검과 연도별 평가를 시행
- 모니터링의 주체는 사업시행자(시군)에서 주어진 양식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 평가시에는 주어진 양식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시군)에서 자체 진단(평가)보고서를 작성

평가시에는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평가

- 평가의 객관성, 전문성, 일관성을 고려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 중앙부처에서 평가에 일부 참여는 하지만, 행정에서 추진시 평가의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점이 감안됨

## 1. 법·제도적 근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지방재정법 제5조),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5조)에 근거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국가재정법」 제8조<sup>17)</sup> 및 제8조의 2,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주요재정사업의 평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성과중심의 재정운영),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성과평가의 반영)에 근거함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평가)에 의함

17) 국가 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영), 국가재정법 제8조의 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충남 균형발전사업 성과평가의 법적 근거 검토

구분	주요내용
<p>국가재정법 제8조 (성과중심의 재정운용)</p>	<p>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b>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b> 구축하여야 한다.</p> <p>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b>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b>(「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④ 삭제 &lt;2008. 12. 31.&gt;</p> <p>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p> <p>⑦ 삭제 &lt;2014. 1. 1.&gt;</p> <p>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p> <p>⑨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지방재정법 제5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b>성과관리체계를 구축</b>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b>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b>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b>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b>할 수 있다.</p> <p>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p>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 2 (주요재정사업의 평가)</p>	<p>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p> <p><b>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b></p> <p>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p> <p><b>2. 시·군 및 자치군</b></p> <p>가.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구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b>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과 목표</li> <li>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li> <li>3. 성과 평가와 그 지표</li> <li>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li> <li>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과 주요 재정 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p>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 (성과평가의 반영)	<p>도지사는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b>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과가 미흡한 지방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다.</b></p>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도지사는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li> <li>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③ <b>도지사는 매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b></li> <li>④ <b>도지사는 연도별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b></li> </ol>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9조 (균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li> <li>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b>2.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b></li> <li>3. 균형발전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li> </ol> </li> </ol>

## 2. 기본방향

정책 목표-사업별 성과목표간, 사업별 성과목표는 공통 성과지표와 특화지표를 이원화된 성과관리 체제로의 전환

-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은 저발전지역에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격차를 축소하고자 한다는 정책목적 대비 시군별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성과목표간의 논리적 정합성이 유지가 빈약함
- 계획, 사업은 정책목표에 따라 도입시설, 이를 통해 실현코자 하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지만,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의 사업계획은 정책목표, 도입시설, 성과지표의 인과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음
  - 균형발전목적에 비추어 핵심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정주인구 증가, 경제 성장률 등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수치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시군의 사업계획의 부문이 경제, 산업, 관광, 문화·복지, 인프라 등 다양하게 분포하여 일률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특화지표로 설정함이 필요함

일련의 사업추진과정에 따른 단계별 구체적인 평가체계 마련하고, 균형발전사업의 내실화 도모

- 사전준비단계 → 계획수립단계 → 집행단계 → 운영관리단계에 대해 공통된 평가지표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마련이 필요
- 기존의 재정사업 집행을 중심 모니터링·평가, 운영관리를 고려하지 않은 투입 중심의 평가는 사업으로 인한 결과와 정책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어려움
- 이를 위해 충남도 행정만으로는 역부족이고, 객관성, 통일성 담보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이 필요함

성과목표의 측정방식의 객관성 및 신뢰성 담보

- 대부분의 사업계획이 정주인구를 증가하려는 노력보다는 일자리수, 관광객수, 문화·복지적 만족도, 역량강화 등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함
- 현재의 계획내용은 행정, 용역사가 자의적 판단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 측정방식 등을 제시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함

지역사회의 성숙, 자립화를 위해 추진체계 운영을 타 내역사업보다 선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 민간, 전문가, 이해관계자에 대한 추진체계 설정 및 의견수렴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 무엇보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할 추진체계를 급조함에 따라 행정중심의 관행적인 사업진행과 더불어 용역사 일임식의 역량강화사업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음

### 3. 모니터링·평가 체계

#### 1) 목적 명확화

일관된 방향성, 정책목표에 대한 이해관계자간의 공감대 형성으로 충남 균형발전사업의 내실화

- 충남의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시군(행정), 전문가, 용역사, 주민의 이해도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성과평가 체계를 통해 일관된 방향성 공유와 정책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 이를 위해 핵심 성과지표 설정, 정책목표와 성과지표간 인과성 확보, 성과지표와 산정방식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조사 및 모니터링 기반 마련(박상우, 2019)<sup>18)</sup>이 절실하게 요구됨<sup>19)</sup>

#### 2) 전체 과정별 절차 및 주요내용

사전준비단계는 개발계획 승인 2년전부터 준비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 추진체계를 구축

- 균형발전사업 정책 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후보사업군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
- 균형발전사업 발굴을 위해서 자가진단 및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토록 함
  - 균형발전사업의 목적에 부합여부
  - 계획의 충실성·구체성 여부

18) 박상우외3(2019), 어촌뉴딜 300 사업 성과평가 체계 구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 이러한 내용은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성과목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되고, 도, 시군, 균형발전위원회, 사업참여자 등 이해관계자간의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향후 추진과제로 남겨둠

- 사업내용의 적정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계획수립 단계는 개발계획 승인을 목적으로 수요타당성, 성과목표, 사업추진체계, 모니터링·평가에 중점을 둠

- 계획수립단계는 사업실행을 전제로 현안진단, 수요타당성 확보, 성과목표 설정 단계에서 점검·컨설팅 시행
  - 대부분 용역사에 일임하는 형태를 취하며, 용역사는 시군의 행정의 요구 내용으로 과업을 수행함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필요
- 사업추진의 원활성, 지역사회의 자립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체계 설정, 추진방식, 모객 집단에 대한 점검·컨설팅 시행
  - 종합추진체계의 의견과 충남도 평가위원 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특히, SW사업 및 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역량이 미흡한 용역사가 수행시 균형발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세부내역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 수행
- 사업계획의 수요타당성은 대부분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수요타당성 전반 및 경제성·재무성이 부풀려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타당성 조사 수행시 컨설팅 시행
  - 수요타당성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수혜인구를 고려한 수요타당성, 도입가능 기능·시설 설정의 적정성, 시설규모의 적정성, 운영인력·경비의 적정성에 대한 일관된 과정을 용역사가 수행하기에는 객관성과 타당성에 한계를 노정하므로,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코칭 필요
- 성과목표 설정시 총괄부서, 사업부서간 조율 및 지표, 산출방식 등에 대한 컨설팅 시행
  - 시군의 균형발전사업의 비전, 목표, 성과목표, 산출근거 등 전반적인 산출의 타당성 검토 시행
  - 개별사업(사업부서)의 도입가능 기능, 시설의 규모설정의 적정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에 균형발전목표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 시행
- 인식도가 낮은 모니터링·평가체계에 대한 수정·보완 컨설팅
  - 시군에서는 모니터링·평가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계획내용은 대부분 용역사에 일임하는 형태이고, 계획내용은 대부분 현장에서 추진하기 어렵거나 추진해야할 주체, 행정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 못함

사업시행단계는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수에 대응하고, 변경·조율하는 추진과정의 효율성, 성과목표 달성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시행

- 일반적으로 사업추진단계에서는 예산집행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예정 집행액 대비 실제 집행액에 의한 공정률임
- 사업시행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현장의 변수에 대한 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해 모니터링 시행하고, 사업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을 진단하여 사업 성과목표를 수정·조정이 요구됨
  - 시행단계에서 나타나는 변수들은 제도적인 사전이행조치의 미시행, 사업부지의 이동, 환경상의 문제, 추진체계상 예정 참여자의 미참여, 참여자 모습 미흡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함
- 사업추진시 다주체가 참여하는 사업인 경우, SW·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지역사회와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위기관리 및 갈등대처를 조정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함
- 특히, 새롭게 운영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바, 사업의 준공에 맞추어서 사전에 운영관리계획을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고, 계획수립과정에서 컨설팅, 평가를 시행함
  - 이러한 운영관리계획은 후속 단계에서 이루어질 사업의 성과목표와도 긴밀한 관계를 갖음

운영관리단계는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평가하는 핵심단계로 새롭게 추가 강화하여야할 사항임

- 현재까지 균형발전사업은 조성된 건축물·시설물·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 사업에 대해서 제1단계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제2단계 제1기에 반영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을 물론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사업효과 측정을 위해서 경제적 파급효과(생산, 부가가치, 고용)를 재검토하고, 이를 결과지표와 환류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정성적 파급효과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문화·복지·체육시설의 경우 경제성으로는 성과측정이 어려우므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평가의 시행이 요구됨
- 사업 완료 후 5년까지는 사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평가가 필요

균형발전사업 전체 과정별 평가 절차(안)

구분	사전준비단계	계획수립단계	사업시행단계	운영관리단계
제1기	2019~2020	2020. 7	2021~2025	2026~
제2기	2023~2024	2025	2026~2030	2031~
주요 내용	사업 발굴 주민의견 수렴 예비계획서 수립·승인	개발계획 수립·승인 시행계획 수립·승인	사업시행	성과 및 효과 평가
균형 발전 위원 회 역할	예비계획서 검토·승인	개발계획서 심의·승인* 시행계획서 심의·승인*	시행계획의 평가* 사업계획 변경 심의·승인 운영계획 컨설팅	효과 평가
대상	도, 시·군 (모든 사업)	도, 시·군 (모든 사업)	도, 시·군 (모든 사업 / 변경코자 하는 사업)	도, 시·군 (모든 사업)
시기	개발계획 신청·승인 前 (신청 1년 前)	개발계획 제출 前 (2-5월)	당해연도 집행 완료 후 (3-7월) 운영계획서는 사업별 완료 전(3-7월 컨설팅)	당해연도 집행 완료 후 (3-7월)
주기	개발계획 승인(변경) 신청시	개발계획 신규사업 예산 신청시	매년 (단, 개발계획 승인 2년후 부터 시행)	매년
활용	사업제척 및 조정	사업 착수시기 연기 및 규모 조정	사업조정 등	사업조정 및 컨설팅
주체	충남도(균형발전위원회) (외부기관 위탁)	충남도(균형발전위원회) (외부기관 위탁)	충남도(균형발전위원회) (외부기관 위탁) (지자체 자체평가 → 서면심사·현지심사 → 평가결과 확정 → 평가결과 통보)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목적 부합성</li> <li>계획 충실성·구체성</li> <li>사업추진가능성</li> <li>사업 적정성</li> <li>사업 추진체계 적정성</li> <li>-종합 추진체계 구성</li> <li>-사업별 역량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목적 부합성</li> <li>계획 충실성·구체성</li> <li>- 사전이행조치</li> <li>성과목표 적절성</li> <li>수요확보 가능성·타당성</li> <li>사업적정성</li> <li>사업추진체계 적정성</li> <li>점검·평가체계 적정성</li> <li>타부처 계획 연계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집행률</li> <li>공정률</li> <li>성과목표 달성률</li> <li>모니터링 적정성</li> <li>갈등대처 역량</li> <li>운영계획 적정성·실현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목표 달성도</li> <li>사업효율성</li> <li>고객 만족도</li> <li>사업성과 후 모니터링·평가</li> </ul>
시군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발굴(자가진단)</li> <li>종합 추진체계 구성</li> <li>전문가 위촉·자문</li> <li>예비계획서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투자심사</li> <li>성과목표 설정</li> <li>사업계획 구체화</li> <li>개발계획서 작성</li> <li>공정표 작성</li> <li>시행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진체계 역량강화</li> <li>설계-공사발주-시공</li> <li>SW발주-T·B</li> <li>운영계획서 수립**</li> </ul>	

주) \*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균형발전위원회 기능(제9조)에 규정된 사항임

\*\* : 운영계획서는 각 사업별 완공 10개월전에 착수, 6개월전에 균형발전위원회의 컨설팅·심의를 받고, 익년도 예산에 반영

## 4. 모니터링 방법(안)

### 1) 추진방법

충청남도 모니터링 전문 조직 구축 운영(외부 전문기관)

- 모니터링 전담 조직은 지역개발, 경제·산업, 문화·복지·예술 등 균형발전 분야별 개발계획 전문가 약 20인 내외로 구성
- 모니터링 업무 추진방향, 주요 모니터링 항목 결정 등 모니터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추진
-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모니터링은 시군과 협조하여 실시하되 사전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시행

모니터링은 충남도와 전문가가 합동으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시행

- 분기별 주어진 양식에 의거하여 추진실적을 시군 기재
- 반기별(전반기, 후반기)로 현장답사를 시행하며, 애로사항 해결형의 컨설팅 중심으로 시행
- 분기별 모니터링 : 개발계획서와 현장답사를 통해 대상지의 물리적 여건, 사업계획, 예산, 사업추진체계를 분석하고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 반기별 모니터링 : 분기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계획대비 현장 수행정도, 사업추진과정의 변화요인과 문제점 도출하여 사업계획 변경·조정

### 2) 모니터링 항목

#### (1) 사업 시행단계

계획 대비 집행률 추진 실적, 각 주체별 활동 내역, 협력 및 협업체계 운영실적 등을 모니터링(분기별 / 자가진단성격)

- 계획대비 집행률 추진실적은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각 세부사업별로

추진실적을 제시함(체크리스트 및 지자체 자체 기입 및 분기별 시행)

- 각 주체별 활동은 행정, 전문가, 주민 등 민간조직체, 중간지원조직의 회의를 기본으로 기재하고, 주민 공동체를 비롯한 역량강화 차원의 네트워크 확대 활동을 기재함(체크리스트 및 지자체 자체 기입 및 분기별 시행)
- 협력 및 협업체계 운영실적은 지자체의 역할, 부서간 협업, 주민·타 지자체 간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운영상황 체크함(체크리스트 및 지자체 자체 기입 및 분기별 시행)

반기별 모니터링은 분기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종합하여 현장의 수행정도를 검토하고 현장 컨설팅을 시행 → 사업 변경요인 발생시 균형발전 개발계획, 시행계획 변경을 균형발전위원회에 상정(현장 점검 및 컨설팅 성격)

- 반기별 모니터링은 분기 모니터링을 종합 검토하여 각 세부항목별 종합 분석을 시행
- 모니터링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사업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해결 대안 모색방안 제시
- 현장에서 수용·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균형발전위원회에 상정<sup>20)</sup>

## (2) 운영관리단계

균형발전사업의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최종 모니터링

- 균형발전사업 성과지표 달성도를 결과지표 중심으로 모니터링하며, 실제 운영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 필요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과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 경비 등을 모니터링

- 건축물, 시설물, 관련이해관계 조직을 자립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와 운영관리계획에 따른 인력, 경비 자체 부담 여부를 모니터링

사업파급효과 대비 실 파급효과의 실제 검토

- 최초 계획대비 사업파급효과를 재검토하고, 정량적·정성적 측면에서 자체 평가 시행내역을 모니터링

20) 사업계획의 변경시 사업계획 변경 사유, 변경 원칙 입증 자료 등에 대해 충남도에 사전 검토를 받고, 균형발전위원회에 상정(균형발전위원회 상정 요인은 별도 지침으로 제시)

균형발전사업 사업시행단계 모니터링 항목(안)

구분	중분류	세분류	주요내용	시행		배점	
				분기 (서면)	반기 (현장)		
집행률 제고 노력	사업추진 가능성	토지 확보성	◦ 토지확보 여부	○		30	10
		법제도적 이행조치 수행성	◦ 사전이행조치 및 법제도적 이 행사항 완료 여부	○	○		10
	사업추진 실적	예산 집행률	◦ 예산 대비 실 집행률	○			5
		자체 자원 확보율	◦ 시군비, 민간 확보율	○			5
목표 달성도	성과목표 적정성	성과지표 적정성	◦ 성과목표 적정성(O/D)	○	○	20	8
	성과목표 성취가능 성	성과목표 실현 가능성	◦ 성과목표 산출식 대비 실현가 능성	○	○		7
		지자체 사업 연계	◦ 타 관련사업 배정 여부	○	○		5
추진체계 운영 실적	전담체계	총괄-사업부서 운영실적	◦ 회의 및 보고 실적	○		35	5
		자체 점검시스템 운영 적정성	◦ 자체 점검 및 평가 시스템 운 영 여부(전문가 참여·시행)	○	○		5
	추진체계	민간활동 연계	◦ 민간(주민)조직과의 연계도모 회의, 컨설팅 실적	○	○		5
		전문가 참여 정도	◦ 전문가 총괄, 자문의 정기회의, 임시 회의 실적	○	○		5
		사업자립화 정도	◦ 건축물·시설물 운영을 위한 사 회적 경제조직 운영 실적	○	○		5
	운영관리 체계	관리운영 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정성	◦ 시설조성후 관리 및 운영체계 적정성	○	○		5
		유지관리 조례 제정·운영실적	◦ 유지관리 조례 제정, 운영비용 담보 실적	○	○		5
사업파급 효과	홍보실적	이미지 제고수준	◦ 방송, 신문, SNS등 대외적 홍 보 수준	○		7	7
갈등 및 리스크 관리	갈등 사업 지연 여부		◦ 법적 소송, 언론 방송, 민원 발생 여부	○	○	8	8

주1) 제시된 항목과 배점은 제1단계 충청남도균형발전사업 종합평가(19.6)에 의거하여 연구자 재작성 - 배점기  
준안은 향후 전문가 AHP 시행하여 재작성 필요

주2) 분기 서면은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별도의 양식에 의거하여 시군 제공 필요

주3) 반기 현장평가는 서면 검토에 근거하여 시행하므로, 중점 검토 사항만을 체크함

균형발전사업 운영관리단계 모니터링 항목(안)

구분	중분류	세분류	주요내용	시행		배점	
				분기 (서면)	반기 (현장)		
목표 달성도	성과목표 적정성	성과지표 적정성	◦ 성과목표 적정성(O/D)	○		20	8
	성과목표 성취가능 성	성과목표 실현 가능성	◦ 성과목표 산출식 대비 실현가 능성	○	○		7
		지자체 연계사업 추진 여부	◦ 후속, 연계사업 추진 여부	○	○		5
추진체계 운영 실적	자체 점검 체계	자체 점검시스템 운영 적정성	◦ 자체 점검 및 평가 시스템 운 영 여부(전문가 참여·시행)	○	○	10	10
				운영관리 기반구축	유지관리 조례 제정·운영실적		
	전문가 참여 정도	◦ 전문가 참여실적	○			5	
	관련 네트워크 구축 실적	◦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유사· 동종 관외 네트워크 구축·운영 실적(포럼, 워크숍, 현장방문 여부)	○		○	5	
	사업자립화 정도	◦ 건축물·시설물 운영조직의 역 량강화 실적	○		○	10	
		◦ 운영관리 경제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비용 흑자 전환 도모 실적)	○	○	30		
사업파급 효과	홍보실적	이미지 제고수준	◦ 방송, 신문, SNS등 대외적 홍 보 수준	○		10	2
	파급효과	경제성 및 파급효과	◦ 경제성 분석 및 당초 계획 대 비 비교 실적	○	○		4
			◦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대비 만 족도 증가 실적		○		4

주1) 제시된 항목과 배점은 제1단계 충청남도균형발전사업 종합평가(19.6)에 의거하여 연구자 제작성 - 배점기  
준안은 향후 전문가 AHP 시행하여 재작성 필요  
주2) 분기 서면은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별도의 양식에 의거하여 시군 제공 필요  
주3) 반기 현장평가는 서면 검토에 근거하여 시행하므로, 중점 검토 사항만을 체크함

## 5. 평가 방법(안)

### 1) 추진방법

#### 충청남도 평가 전담 조직을 구축 운영

- 평가 전담 조직은 균형발전위원회, 외부전문가, 도민평가단, 시군추천 평가단, 충남도로 구성하여 운영
  - 균형발전위원회와 외부 전문가는 지역개발, 경제·산업, 문화·복지·예술 등 균형발전 분야별 개발계획 전문가 약 20인 내외로 구성
- 평가는 시군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의 3단계로 시행
- 평가를 위해 전담반을 편성하고, 전담반은 평가 업무 추진방향, 주요 평가항목 결정 등 평가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추진
- 사업평가는 1년에 1회 시행하되, 시군과 협조하여 실시하되 사전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시행
  - 사업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패널티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승인 후 2차년도 6월~7월에 시행

#### 평가는 각 단계별 참여 인원이 상이하며, 하며, 2차년도부터 매년 5-6월에 시행

- 제1단계 서면평가 : 주어진 양식에 의거하여 사업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전문가 서면 평가
  - 시군별 평가보고서<sup>21)</sup> 작성 및 서면평가 시행
- 제2단계 현장평가 : 시군사업평가 보고서를 기초로 합동 현장 평가 시행
  - 1차 평가 : 모든 사업에 대한 전수점검 및 평가자료 보완(충남도, 평가 전담조직)
  - 2차 평가 : 평가 전문성, 객관성, 이로간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 평가단 운영(충남도, 균형발전위원회, 외부전문가, 주민 평가단)
- 제3단계 종합평가 : 종합평가 및 평가결과 발표
  - 평가단의 현장평가, 발표자료를 종합하여 평가 확정
  - 종합평가 결과 정리, 결과보고, 이의신청 검토
  - 평가결과의 최종발표 및 통보

21) 시군별 자체 평가보고서는 2019년 시행내역 참조

### 균형발전사업 평가 절차(안)



## 2) 평가 항목

계획대비 집행률 제고노력, 성과관리, 추진체계운영실적, 사업파급효과 등을 평가함

- 집행률 제고노력은 사업추진가능성,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함
  - 집행률 제고노력은 토지확보가능성, 법제도적 이행조치 수행성을 등을 평가
  - 사업추진실적은 예산 집행률, 자체재원 확보율 등을 평가
- 성과관리는 평가의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서 균형발전사업 목적성 대비 공통지표에 대한 달성도, 성과목표 적정성, 성과목표 성취가능성 등을 평가함
  - 균형발전사업에 따른 인구·가구구조 변화, 산업경쟁력 변화율, 상권활성화 정도, 유동인구 증가 정도를 평가함
  - 성과목표 적정성은 성과목표 계획수립 최초 자료와 설정된 목표치의 적정성을 평가함
  - 성과목표 성취가능성은 개별 사업별로 산출식 대비 실현가능성, 최초값 대비 현재값, 계획수립 목표값 대비 현재값, 타 관련 사업 배정 여부를 평가함
- 추진체계 운영실적은 운영관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평가해야하는 사항으로 전담체계, 추진체계, 운영관리 체계 등을 평가함
  - 전담체계는 행정에서 총괄-사업부서간 운영실적, 자체 점검 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함
  - 추진체계는 주체별로 민간, 전문가로 크게 나누어서 민간 활동은 참여정도, 변화 인식 정도, 자력화 기대정도를 평가하고, 전문가 참여는 총괄, 자문, 조정 등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함
  - 추진체계에서 중요한 사업자립화 정도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수, 회원수, 활동가 수를 평가함

- 운영관리 체계에서는 운영관리 계획 및 계획의 적정성과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 운영실적등을 평가함
- 사업과급효과는 홍보실적, 갈등 및 리스크 관리 등을 평가함

균형발전사업 평가 항목(안)

구분	중분류	세분류	주요내용	시행			배점		
				서면	현장	종합			
집행률 제고 노력	사업추진 가능성	토지 확보성	◦ 토지확보 여부	○			20	5	
		법제도적 이행조치 수행성	◦ 사전이행조치 및 법제도적 이행사항 완료 여부	○	○			5	
	사업추진 실적	예산 집행률	◦ 예산 대비 실 집행률	○				5	
		자체 자원 확보율	◦ 시군비, 민간 확보율	○		○		5	
성과관리	균형발전사업 목적성 (공통지표)		◦ 인구, 가구구조 변화	○		○	40	5	
			◦ 산업 경쟁력 변화율	○		○		5	
			◦ 상권활성화 정도	○		○		5	
			◦ 유동인구 증가 정도	○		○		3	
	성과목표 적정성	성과지표 적정성	◦ 성과목표 적정성(O/D)	○	○	○		5	
	성과목표 성취가능 성	성과목표 실현 가능성	◦ 성과목표 산출식 대비 실현가능성	○	○	○		5	
		성과목표 변화 정도	◦ 계획수립 최초값 대비 현재값	○		○		5	
		성과목표 달성 정도	◦ 계획수립 목표값 대비 현재값	○		○		5	
지자체 사업 연계		◦ 타 관련사업 배정 여부	○	○	○	2			
추진체계 운영 실적	전담체계	총괄-사업부서 운영실적	◦ 회의 및 보고 실적	○	○		30	5	
		자체 점검시스템 운영 적정성	◦ 자체 점검 및 평가 시스템 운영 여 부(전문가 참여·시행)	○	○	○		5	
	추진체계	민 간 참 여	참여정도	◦ 주민설명회 참여자수 ◦ 공동체 프로그램 수 ◦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자수 ◦ 주민 의견수렴 회의 참석자수	○	○		○	8
		변화 인식정도	◦ 설문조사당 의견수렴 값 측정 ◦ 주민대상 행사 참여자수	○	○	○		7	

구분	중분류	세분류	주요내용	시행			배점	
				서면	현장	종합		
		자력화 기대 정도	◦ 현장 인터뷰 및 통합 워크숍	○	○	○		5
		전문가 참여 정도	◦ 전문가 총괄, 자문의 정기회의, 임시 회의 실적	○	○	○		5
		사업자립화 정도	◦ 건축물·시설물 운영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 실적 ◦ 사회적 경제조직 회원수 ◦ 활동가 수	○	○	○		5
	운영관리 체계	관리운영 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정성	◦ 시설조성후 관리 및 운영체계 적정성	○	○			5
		유지관리 조례 제정·운영실적	◦ 유지관리 조례 제정, 운영비용 담보 실적	○	○	○		5
사업파급 효과	홍보실적	이미지 제고수준	◦ 방송, 신문, SNS등 대외적 홍보 수준	○			5	5
갈등 및 리스크 관리	갈등 사업 지연 여부		◦ 법적 소송, 언론 방송, 민원 발생 여부	○	○		5	5

주1) 제시된 항목과 배점은 제1단계 충청남도균형발전사업 종합평가(19.6)에 의거하여 연구자 제작성 - 배점기준안은 향후 전문가 AHP 시행하여 제작성 필요

주2) 서면평가는 별도 양식에 의거하여 시군 제공(2019년 사업평가 자료 참조)

주3) 현장평가는 민간인이 참여하므로, 중점사항 중심으로 체크함

주4) 종합평가는 서면, 현장평가에 의거하여 전수평가

주5) 균형발전사업 목적성(공통지표)는 작성자의 개인 의견으로서 향후 의견 수렴 및 검토 필요

민간평가자 평가 항목

구분	세부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획단 계	계획 타당성 · 적정성	균형발전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균형발전사업 투입이 필요한가?	①	②	③	④	⑤
		다른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가?	①	②	③	④	⑤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①	②	③	④	⑤
	성과 계획 적정성	성과목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제시하였는가?	①	②	③	④	⑤
		수요가 과대포장되지 않고, 적정한가?	①	②	③	④	⑤
집행단 계	집행 적정성	예산을 제때에 집행하였는가?	①	②	③	④	⑤
		다른 부처기관과 적극 협조하였는가?	①	②	③	④	⑤
		주민·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는가?	①	②	③	④	⑤
	사업 관리 적정성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 혹은 민간 등 전담조직을 구축·운영하였는가?	①	②	③	④	⑤
		행정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였는가?	①	②	③	④	⑤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토록 적극 노력하였는가?	①	②	③	④	⑤
성과 · 유지관 리단계	파급 효과 달성도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①	②	③	④	⑤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국비확보, 확대 지원 등을 시행하였는가?	①	②	③	④	⑤
		수혜주민이 넓으며, 만족하겠는가?	①	②	③	④	⑤
	운영 관리 적정성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했는가?	①	②	③	④	⑤
		운영주체, 운영비가 적정한가?	①	②	③	④	⑤
		확대 필요성이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문제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행정에서 노력했는가?	①	②	③	④	⑤
		문제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자구적으로 노력했는가?	①	②	③	④	⑤

- Lewis, J.P.(1998), Mastering Project Management, NewYork:McGraw-Hill
- 관계부처 합동(2018), 국회예산정책처, 도시재생 뉴딜 분석
- 국토교통부(2014), 지역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 김경량 외 2(2005),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간평가체계 개발, 한국농촌계획학회지 제12권 12호
- 농림축산식품부(202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시행지침
- 박상우외3(2019), 어촌뉴딜 300 사업 성과평가 체계 구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서울연구원(2017),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체계
- 이주용(2011), 장류적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평가 지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종렬 외(2003). 국토이용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토지주택연구원(2018),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정보활용 방안 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9),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및 기법개발.
- 한상욱(2009)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개선방향, 워크숍 자료, 충청남도
- 황한철(2007), 농촌개발사업의 추진실적 평가항목 선정 및 가중치 산정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제13권 제2호

#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정산보고서(별지1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총보조사업비)							
<b>1. 일반현황</b>							
중앙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프로그램명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단위사업명	일반농산어촌개발				
세부사업명	일반농산어촌개발(지역자율),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 일반농산어촌개발(세종) 중 선택	내역사업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시군역량강화 중 선택				
상위보조사업명	차상위보조사업명(광역/교육청: 중앙관서 교부는 미기재, 기초/학교는 광역/교육청 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명	시·군 보조사업(사업지구 명)				
보조사업자	OO 시장·군수	보조사업 담당자	시군 담당자 성명				
총 사업기간	*국고금 교부 기간(실제 사업기간)						
* 총사업기간은 국고금교부 마지막 연도 기준 2회계 연도를 초과할 수 없음							
<b>2. 보조사업비 현황</b> <span style="float: right;">(단위: 원)</span>							
보조금(㉑)	지자체부담금(㉒)		자기부담금(㉓)	합계(㉔=㉑+㉒+㉓)	보조금비율 [㉑=㉑÷(㉑+㉒)]		
	시도	시군구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체험·소득 자기부담금	재원별 합계	70%		
<b>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b> <span style="float: right;">(단위: 원)</span>							
집행액(㉕)		집행잔액(㉖)		발생이자(㉗)		타 사업지구로 예산편성(㉘)	
합계		합계		합계		합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지방비		지방비		지방비		지방비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반환대상액 (㉙=㉖+㉗-㉘)		국고보조금 반환액(㉚)		지자체부담금 반환액(㉛)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㉜=㉙-㉚-㉛)	
집행잔액+발생이자-타사업지구 예산편성 금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국고보 조금 발생이자-타 사업지구 예산편성금액		지자체부담금 집행잔액+지자 체 부담금 발생이자-타 사업 지구 예산편성금액		반환대상액-국고보조금반환 액-지자체부담금 반환액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보고서(별지2호 서식)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완료 보고서**

( ○○도 ○○시·군 ○○읍·면 )

작성 자	소속(과)	직급	성명	사무실	e-mail
	시군 담당자				
	시군 담당자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완료 보고서

## 1. 개 요

지 구 명					
사업위치	중 심 지				
	배후마을				
공공기관 위수탁 여부	일괄/부분 /자체수행	위수탁 내용			
관련조직	지자체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			
	위수탁기관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 *위수탁 경우만 작성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명(☎ ) 사무장 : 성명(☎ )			
주요사업	• H/W: • S/W: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지방비, 자부담 )				
사업기간	(○년간)				
착수년도					
계획승인	기본계획	수행기관:      승인일자:			
	시행계획	수행기관:      승인일자:			
사업착공	H/W사업	[토목] 수행기관:      공사기간: [건축] 수행기관:      공사기간: [기계] 수행기관:      공사기간: [전기] 수행기관:      공사기간:			
	S/W사업	수행기관:      용역기간: 책임PM: 성명(☎/이메일)			
시행계획변경	1차 승인일자:      , 2차 승인일자:      , 3차 승인일자:				
준공일					
예산집행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승인액	정산액	잔액	비고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 2. 추진실적(물량)

구 분	물량	단위	연도별 추진실적					비고
			1년차 (‘15년)	2년차 (‘16년)	3년차 (‘17년)	4년차 (‘18년)	5년차 (‘19년)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세부사업4								
세부사업5								
부대비용								

### 3. 사업비 정산내역

#### □ 수 입

(단위 : 천원)

공 종	총사업비 승인액	정산액					잔액	비고
		합계	1년차 (‘15년)	2년차 (‘16년)	3년차 (‘17년)	4년차 (‘18년)		
합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 지 출

(단위 : 천원)

공 종	총사업비 승인액	정산액					잔액	비고
		합계	1년차 (‘15년)	2년차 (‘16년)	3년차 (‘17년)	4년차 (‘18년)		
합 계								
○ 사업비								
-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 세부사업3								
- 세부사업4								
- 세부사업5								
○ 부대비용								
- 기본계획수립								
- 시행계획수립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기타법정경비								

\* 자부담은 내서로 <표기>하고 해당항목 상단에 기록

\* 보상비는 사업비에 포함하여 작성

#### 4. 세부사업별 준공내역

##### 가. 세부사업1(H/W)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li> <li>○ 기능</li> <li>○ 규모</li> <li>○ 사업비</li> <li>○ 시공사</li> <li>○ 공사기간</li> </ul>			
부지현황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등기권자)
	합 계			
건축물현황	층별	건물용도	바닥면적(m <sup>2</sup> )	비고
	합 계			
	연면적(m <sup>2</sup> )			
	건축면적(m <sup>2</sup> )			
	구조			
	건축규모			
	소유자(등기권자)			
기타시설 및 비품				
관리자		사용승인일		
관련사진				

### <세부사업1(H/W) 시설운영 현황>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대상	주체	이용현황(명/월)	
	노래교실	실버계층	주민자치센터	50명/월	
	요가교실	전연령층	주민자치센터	30명/월	
	그림교실	청소년층	운영법인	50명/월	
	놀이교실	유아층	운영법인	40명/월	
운영주체	운영주체명	(예시) ○○면 복지센터 운영법인			
	조직구성	중심지 및 배후마을 주민 ○○명			
운영비용 (연간비용= 월비용× 12개월)	전기세				
	전기안전관리비				
	승강기안전관리비				
	상하수도요금				
	냉난방비				
	인건비	운영인력			
		강사비			
	사무관리비 (소모품비 등)				
	유지보수비				
	합계				
유지관리 재원조달	시군지원조례 00조 00호				
관리자		운영개시일			
관련사진					

**※ 향후 운영예정일 경우도 추산하여 작성**

## 나. 세부사업2(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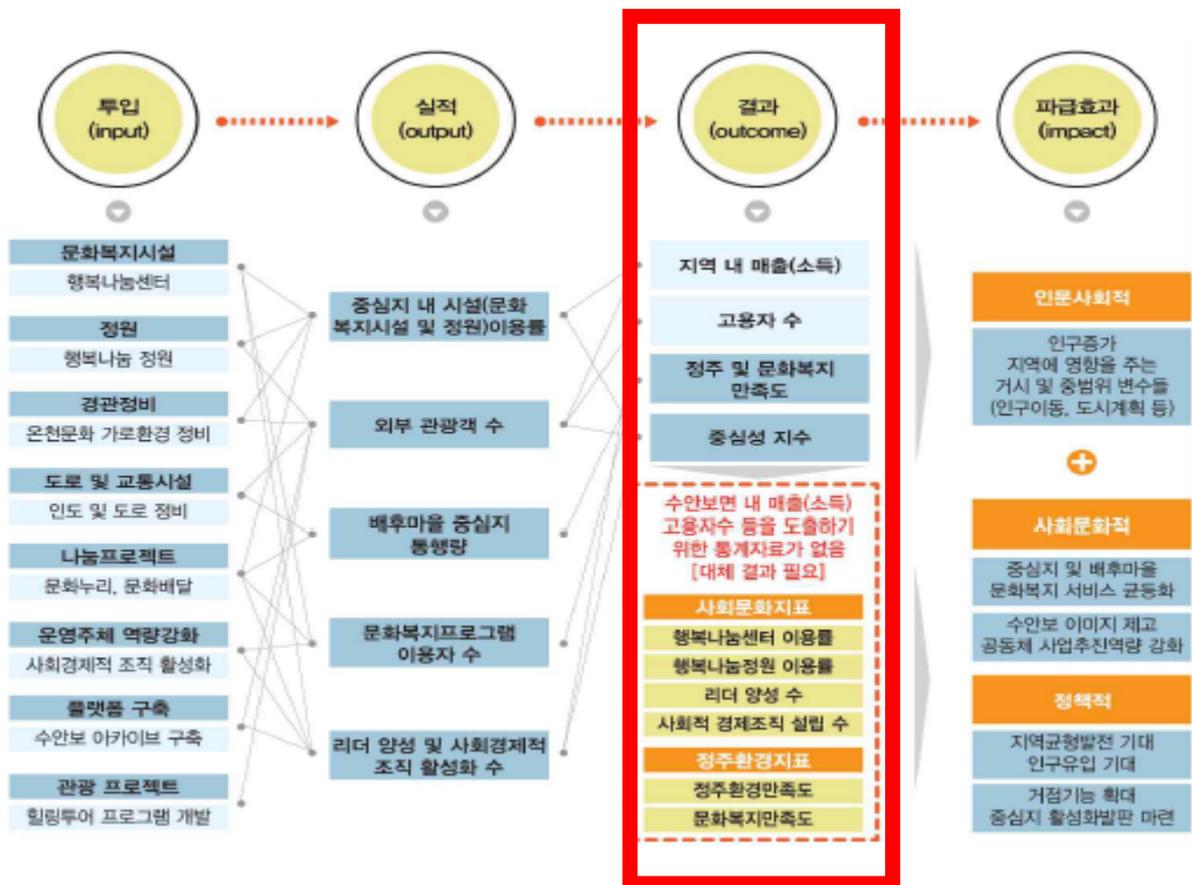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li> <li>○ 사업내용</li> <li>○ 사업비</li> <li>○ 용역사</li> <li>○ 공사기간</li> </ul>
관련 비품	
관련사진	

## 5. 사업성과평가

비전	예시) 일상에서 즐기는 삼락 공동체		
사업목표	예시) 금산전통시장 경제 기능 회복	예시)배후마을 주민 및 상인 문화 복지 서비스 강화	예시)지역내 주민 공동체 활동 강화
실천 전략	1) 노후화된 시장을 정비해 새로운 상인을 유입하기 위한 기반조성 2) 초기 방문객 유도를 위한 이벤트 기획 및 운영	1)주민 및 프로그램 배달을 통한 다락원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 2)금산전통시장 내 상인, 주민 공동체 소규모 문화·복지 거점 조성	1) 새로운 인력발굴, 기존 공동체 활동 장료를 통한 참여주체 역량강화 2)문화, 상인, 대학, 청년 등 각 조직을 네트워킹 하여 사업운영관리
세부 단위사업	1)창업골목 조성사업 2)야시장 조성사업 3)난장가로 조성사업 4)문화장날 운영사업	1)문화배달부 양성 및 운영사업 2)움직이는 다락원 운영사업 3)영화관 및 문화다방 조성사업	1)금산시장 창업 상인 육성사업 2)운영주체 조직화 및 역량강화 3)주민참여형 시장가늠길 만들기 활동 4)옥탑텃밭 조성사업
성과 지표	1)금산전통시장 공점포 2)신규 창출업체 3)소비생활 만족도	1)문화복지프로그램개발 2)문화배달부양성 3)중심지 문화시설 이용률 4)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	1)금산전통시장 상인 2)사업 참여 주민

	지 표(예시)	2015 실적(목표)	2016 실적(목표)	2017 실적(목표)	.....	미달성 사유
계획대비	· 지역 내 매출 소득					
성과지표	· 지역일자리창출(명)					
달성 현황	· 문화복지 만족도					
	· 배후마을참여도					

### 성과목표선정 예시



출처 : 충주시(2018) 수안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본계획(안)

## 6. 주민위원회 구성현황

구분	성명	거주지 주소	참여자 유형*	맡고 있는 직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유형구분 : ① 읍면소재지 거주 주민(중심지에서 도보권 거리), ② 배후마을 주민(도보권 X)  
 ③ 상인, ④ 지자체, ⑤ 시민단체 등 NPO(Non Profit Organization)  
 ⑥ 기타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 7. 기초계획지원단 또는 PM단 구성현황

구분	성명	소속	전담분야	역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유형구분 : ① 농촌계획(도시계획, 지역재생 등), ② 문화, ③ 복지(노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 등)  
 ④ 환경(환경제도·정책, 생태복원, 농촌경관 등), ⑤ 건축(구조·기능, 디자인)  
 ⑥ 경제(농촌산업, 지역경제활성화 등)

## 2.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호)

제정 2015. 6. 24. 행정자치부 예규 제22호

개정 2017. 9. 11. 행정안전부 예규 제10호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요약]

### □ 큰 거

-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 자치단체장은 성과계획서를 작성,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의회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계획서 작성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장에게 통보
- ※ 2015회계연도에 성과계획서 시범작성

### □ 주요내용

- 작성대상 기관 :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 대상업무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 주요내용
  - 전략목표 설정 : 실국별 1개 정도
  - 정책사업 목표 설정 : 1개의 정책사업 목표는 예산체계상 정책사업 1개와 대응
  - 단위사업 설정 : 예산체계의 단위사업과 일치
  - 성과지표 설정 : 측정가능(정량지표)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 설정,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설정
- 추진일정
  - 성과계획서 작성(9월말, 실국) 및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10월, 예산·성과부서)
  - 성과계획서 검토 결과 통보 및 수정·보완(10월, 예산부서↔각 부서)
  - 성과계획서(안) 확정 및 의회제출(10월말~11월, 예산부서)
  - 성과계획서 확정(12월~다음년도 1월)

### □ 시행일 : 2017. 9. 11.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예규)」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이 예규는 2017. 9. 일부부터 적용

# 목 차

I.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개요	/ 1
II.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 4
III. 추진일정	/ 14

## ① 추진배경 및 근거

- 사업예산제도 시행('08년)에 따라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그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과예산서 시범 작성('10~'13년) 실시

## &lt; 자치단체의 성과예산서 시범 운영 결과 분석 &gt;

- ▷ '08년부터 도입된 사업예산제도를 토대로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성과예산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여 '10년부터 성과예산서 시범작성
- ▷ 시범운영 결과, 성과관리계획과 연계 등에 따른 문제점 제기
  - 정책사업 및 성과목표, 단위사업 및 성과지표를 각각 연계토록 하였으나, 1개의 “성과지표”에 수개의 “단위사업”이 연계되거나, 단위사업의 성과지표가 정책사업을 대표할 수 없는 문제점 제기
    - ⇒ (개선)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 단위사업은 성과지표를 설정하는데 보조수단으로 활용
  - 성과관리계획서(당해년도 1~2월)에 맞추기 위해 성과예산서를 예산안 제출 시점이 아닌 성과관리계획이 확정된 이후(2~3월) 작성함으로써 실효성 문제 제기
    - ⇒ (개선) 성과계획서를 예산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토록하여 예산과 성과계획서를 연계토록 함

- 「지방재정법」 개정('14.5월)으로 '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

※ (법 제5조)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의무화, 재정사업 평가제 도입 등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제1항

※ (법 제44조의2)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 서류로 의회 제출

- 성과예산서 시범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사업 예산구조와 성과계획 체계를 일치

※ 2015년도 시범작성토록 「2015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시범작성 매뉴얼」 지자체 통보('14.8월)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예규, 2016. 6.24.제정) 통보

## ② 성과계획서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임
- 지방자치단체의 비전·시정방침·시정방향 및 전략목표 등을 설정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반영
- 당해 연도 정책사업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과거 추세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등을 포함

## ③ 000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 수립 기본방향

- 성과관리 목표체계와 예산 사업구조 체계를 일치시켜 성과관리 강화
- ‘정책사업목표’와 ‘정책사업’, ‘단위사업’과 ‘단위사업’이 각각 1:1로 일치되게 작성

구 분	성과예산서		성과계획서								
성과관리체계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r> <td>성과목표</td> <td>(성과지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성과목표	(성과지표)	↑	↑	⇒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r> <td>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td> <td>단위사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단위사업	↑	↑
성과목표	(성과지표)										
↑	↑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단위사업										
↑	↑										
예산체계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r> <td>정책사업</td> <td>단위사업(1~N)</td> </tr> </table>	정책사업	단위사업(1~N)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r> <td>정책사업</td> <td>단위사업</td> </tr> </table>	정책사업	단위사업					
정책사업	단위사업(1~N)										
정책사업	단위사업										
작성형태	단위사업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정책사업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 성과예산서에서 정책사업 및 성과목표, 단위사업 및 성과지표를 각각 연계토록 하였으나, 1개의 “성과지표”에 수개의 “단위사업”이 연계되거나, 개별적인 단위사업의 성과지표가 정책사업을 대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됨

## □ 성과지표 적정성 검증

- 정책사업별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측정 가능한 지표개발
- 성과지표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실국장(국이 없는 군은 과) 책임 하에 작성하여 예산 부서에 제출
- 예산부서는 각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해당연도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적정성 등에 대해 성과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반영

※ 필요한 경우 성과계획서안에 대해 내부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

## □ 전산시스템을 통한 성과계획서 작성

- 전산시스템을 통한 성과계획서의 작성 및 관리는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e호조) 개선과 연계하여 추진

## 4 작성 대상기관 및 업무

### □ 대상기관

-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 □ 대상업무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 성과관리대상 : 정책사업

※ 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예비비 등 정책사업 과목이 아닌 예산, 징수 교부금 등 사업경비가 아니면서 분야·부문이 독립되어 불가피하게 정책 사업으로 구조화된 정책사업은 제외 가능

##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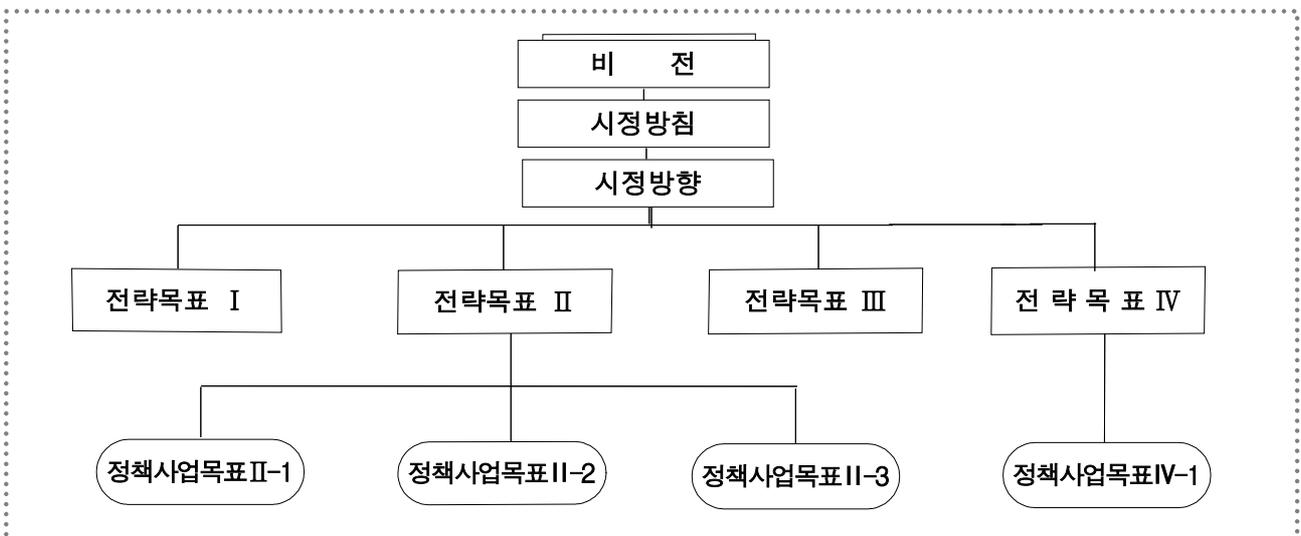
#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 1 기본방향

- 기관의 임무와 전략목표에 기초한 정책사업 목표체계 제시
- 성과계획 목표체계와 예산체계로 일치시켜 성과관리 강화
- 성과지표는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위주로 설정

### 2 목표체계 수립방법

<예산의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예시)>



#### □ 목표설정 방법

##### ① 비전 설정

- 비전은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표현한 것으로 기관이 갖추어야 할 자기역할과 기본방향을 구체화시킨 것을 말함

※ (예시) 혁신하는 정부, 성숙한 지방자치

##### ② 시정방침(목표)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방향 또는 계획

### ③ 시정(운영)방향

- 0000년도 자치단체의 시정(운영)방향을 기재

### ④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실국별로 1개 정도로 작성
- 전략목표는 자치단체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소관부서의 정책사업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해당 실국(국이 없는 군은 과)단위에서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
  -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연계성을 명확하게 작성
- 전략목표는 향후 5년 동안 성과의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함
  - 일반적이거나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정책이 주민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표어 형태로 작성
    - (예)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주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복지시설 확충 및 생활안정 지원 등 생활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적극 추진한다”
    - ※ 전략목표를 임무 수준으로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설정할 경우 향후 재정운용 성과 예측 또는 정책사업목표 설정이 곤란
    - (예)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화한다”(×), “선진 ○○체계를 구축한다”(×)
- 전략목표 수립시 자치단체 중장기계획 또는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장기 계획의 내용을 포함
  -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각 실국(부서)의 소관 분야별로 수립한 중·장기 계획의 주요내용을 활용
    - ※ (예시1)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시민이 행복한 민생안전 추진  
(예시2)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실현 및 안전 생활기반 조성
  - 특히,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수립 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인 ‘재정운용계획’ 내용을 반영

- 전략목표의 수는 그 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게 업무 전반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설정

### ⑤ 정책사업목표 설정

- 1개의 정책사업목표는 예산체계상 정책사업 1개와 대응되도록 설정

< 정책사업목표 설정 예시 >

예산체계		정책사업목표
①정책사업 : 친환경생태도시 조성	⇒	①정책사업목표 환경협력체계 구축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한다.
②정책사업 : 저탄소 기후도시 조성	⇒	②정책사업목표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저탄소 기후도시를 조성한다.
③정책사업 : 자연생태계 보호	⇒	③정책사업목표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보호를 통해 생태 관광을 활성화시킨다.

- 정책사업목표는 해당연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목표임

-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간 또는 정책사업목표와 단위사업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사업목표는 가급적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가 파악되도록 결과 지향적으로 설정

※ 예산체계상 정책사업명을 기준으로 단위사업보다 상위 수준에서 통합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들의 결과를 대표하는 수준으로 설정

-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적(연간)인 성과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략목표와 연계성 강화

- 정책사업목표는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가 불명확 할 경우, 이에 근거한 성과지표 또한 모호해지므로 정책사업목표 설정단계부터 구체성 확보 노력

## ⑥ 단위사업 설정

- 단위사업은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업무 추진 및 향후 성과 측정의 대상이 됨

- 예산체계상 ‘단위사업’ 과 일치되는 개념임

(예) 정책사업목표에 따른 단위사업

- 정책사업목표 (예산체계상 정책사업 : 선진교통도시 건설) :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과 교통인프라 구축 등 선진 교통도시를 건설한다.
- 단위사업 : ① 교통정보 관리, ② 교통체계 구축, ③ 교통시설 환경개선

- 단위사업별로 설정하되,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통해 수행되는 정책, 제도, 규제 등 정책관련 사항은 제외

- 예산소관과 사업추진 주체가 이원화된 경우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단위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설정

※ (예시) 재난부서 성과목표체계 중 보건소의 응급의료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① 성과지표 설정

- 성과계획서 평가를 위해 정책사업목표별로 성과지표를 설정

- 성과지표는 해당 성과를 대표 또는 포괄하는 지표로,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

- 정책사업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지표수는 원칙적으로 3개 이내로 함

※ 지표개발 용이성만을 고려하여,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

(예) 기획·조정 등 업무의 경우 측정가능한 지표 설정을 위해 정책사업목표와 거리가 먼 ‘회의 빈도’, ‘참가자 수’, ‘예산교부율’ 등과 같은 지엽적 지표 설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성과지표를 설정할 경우에는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

**< 참고 > 가중치 설정방법**

◇ 가중치 부여대상

- 하나의 정책사업목표에서 2개 이상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
  - \* 핵심지표: 사업의 궁극적 목적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주 지표
  - 일반지표: 사업의 목적달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보조지표

◇ 가중치 부여방법

- 지표별 가중치는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하고 성과지표의 가중치가 적정\*\*하도록 배분
  - \*\* 핵심지표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핵심지표 가중치의 최소값이 일반지표의 최대값보다 크고 핵심지표 가중치의 합이 60% 이상이 되도록 설정

- 측정가능(정량지표)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 설정
  - 목표 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곤란한 경우 최대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
  -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수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특히 단위사업의 내용과 수준을 고려한 난이도를 반영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른 지표 분류》**

구 분	정량지표 (계량지표)	정성지표 (비계량지표)
정 의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	양적 수치로 측정 불가능
특 성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없음 반복측정 시 동일한 결과	평가자의 주관 개입

- 가급적 정책사업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

※ 사업특성상 결과지표로 설정이 어려운 경우 단순히 산출량이 아닌 산출의 질 (quality)을 측정할 수 있도록 산출지표로 설정

예) 홍보사업 : 단순히 산출의 양을 측정하는 ‘홍보건수’가 아니라 산출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인 ‘홍보물에 대한 인지도’를 성과지표로 제시

< 내용에 따른 지표 분류 >

구 분	개 념	특 성
투입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교육 예산 집행률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산출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 ○○훈련 교육 수료자 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결과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훈련 수료자 취업률/소득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 성과지표의 객관성 확보

-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동 자료의 출처 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특히, 목표치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관대하게 설정하는 것을 금지

**< 성과지표의 설정이 부적절한 사례 >**

**① 성격이 다른 복수의 성과지표를 가중 평균하여 하나의 종합지표를 제시한 경우**

지표명	측정산식
○○○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자 만족도	$(\text{○○○서비스 이용자 수} / \text{○○○서비스 이용자 목표치}) \times 50 + (5\text{점 척도에 의한 만족도 평가점수} / 5) \times 50$

**②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

세부사업	성과지표명
① △△△ (10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수혜인원 수</li> <li>▪ △△△ 일자리 안정도</li> </ul>
② ▲▲▲ (15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이용자</li> <li>▪ ▲▲▲ 프로그램 이용자 수</li> </ul>
③ ○○○ (500억)	-

⇒ 단위사업 중 예산비중이 큰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③ 만족도 유형의 정성적인 성과지표를 하나만 제시한 경우**

⇒ 만족도 유형의 성과지표는 측정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주관이 개입되어 객관성이 미흡하므로, 산출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산출지표 또는 정량적 결과지표를 병행하여 제시

**④ 성과지표가 투입이나 산출의 양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우**

(예시) ○○○ 개선사업

지표명	측정산식
예산집행율(%)	$(\text{당해연도 집행액} / \text{당해연도 예산현액}) \times 100$

⇒ 투입에만 초점이 맞춰진 성과지표는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달성 여부를 확인하기에 미흡하므로 결과지표(개선구간의 사고발생감소 실적) 혹은 의미있는 산출지표 “○○○ 개선실적(km)” 또는 중장기 계획대비 ○○○ 개선실적(km) 등으로 성과지표를 제시

## ②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아래 사항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
  - 과거 추세치(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전국 수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 설정
  -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
  -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설정 근거를 명확히 작성

###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부적정한 경우 >

-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후에 설정한 경우
- ②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과거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③ 과거 사업추진과정 상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 신규지표에 대한 목표치의 경우, 유사사업 또는 과거 추세치 등을 반영하여 기준점으로 삼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으나, 해당 기준점을 그대로 목표치로 설정해서는 안됨
- ④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방안

### ① 비전·시정지표 및 방향·전략목표·정책사업목표 확인

- 지표 개발에 앞서 자치단체의 비전, 시정지표 및 방향,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의 주요내용 확인

### ② 성과지표의 수집

- 기존지표와 타 기관 지표를 수집하여 관련지표 Pool을 형성

### ③ 후보 성과지표 개발

- 다른 사업의 모범지표 사례가 없거나, 선진사례를 통한 지표수집이 어려운 경우,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에 따른 적절한 지표를 새롭게 개발
- 새로 개발된 지표들 중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대상으로 목록 작성

### ④ 1차 성과지표 선정

-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세분화된 경우 대표성이 있는 성과지표로 통합
-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달성이 용이한 지표 사용은 지양
- 수시 측정이 가능하고 자료 활용이 용이한 지표를 선택

### ⑤ 성과지표 조정 및 확정

- 성과지표 간 중복 또는 상충여부를 검토·조정하며,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활동이 여러 부서 간 연계를 통해 추진되는 경우 성과에 대한 책임 범위를 결정
- 성과지표가 확정되면 확정된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방안을 반드시 수립
- 성과지표 관련 자료의 생성과 관리절차를 구체화하고, 외부 환경변화 및 조직 변화에 따른 성과지표의 변경·수정 등 지속적 관리방안을 명확화

### ⑥ 성과지표의 상세화

- 구체적인 측정방법 및 평가기준에 의한 상세화
- 계산식 표현을 통한 상세화

### 3 작성방법

- 다음의 작성모델을 참고하여 당해연도의 정책사업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

#### < 성과계획서 작성모델 >

##### I. 성과계획 목표체계

- 성과계획의 근거가 되는 비전, 시정방침 및 방향, 전략목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당해 성과계획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제시
- 목표체계도, 정책사업목표 및 단위사업 현황
  - 당해연도에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사업목표 등의 목표 체계를 제시하고, 정책사업목표와 단위사업 현황 기술

##### II. 0000년 재정운용 방향

- 당해연도 재정운용 전망과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

##### III. 세부 추진계획

-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사업 및 성과지표 제시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 내용 등
  -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 정책사업목표를 기준으로 단위사업별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사업규모 및 관련예산사업 내역 등을 제시
  - **성과지표의 제시** : 제시된 정책사업목표별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정량적인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의 검증 방법 등을 기술

※ 세부 작성요령은 붙임 양식 참조

### Ⅲ

## 추진일정

- 성과계획서 작성(9월말, 자치단체의 각 실국단위)
  - 각 실국(부서)별로 소관 예산에 대한 0000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부서에 제출
-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10월, 자치단체 예산 및 성과관리 부서)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성과계획서 검토 결과 통보 및 수정·보완 (10월, 예산부서 ⇄ 각 부서)
  -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국(부서)이 제출한 성과계획서에 대해 작성 지침에의 부합성 등을 검토 완료하고, 그 결과를 각 실국(부서)에 통보
    - 전체적인 성과계획목표 체계, 성과지표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
  - 각 실국(부서)은 예산부서의 검토의견과 예산안 협의·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계획서를 수정·보완
- 성과계획서 검토 및 의회제출(안) 확정(10월말~11월, 예산부서)
- 성과계획서 지방의회 제출(11월, 예산부서)
  - 0000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과계획서 의회 제출
- 성과계획서 확정(12월~다음해 1월)
  - 각 부서는 의회의 예산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고, 예산부서와 협의 후 수정·보완하여 「000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확정

<붙임> 성과계획서 작성양식

0000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 ○ ○ ○

(자치단체명)

# 목 차

## 제1장 성과계획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

- 1. 비전 및 체계 .....
- 2. 조직 및 인력 총괄 .....
- 3. 성과계획 총괄표 .....
- 4. 재정운용 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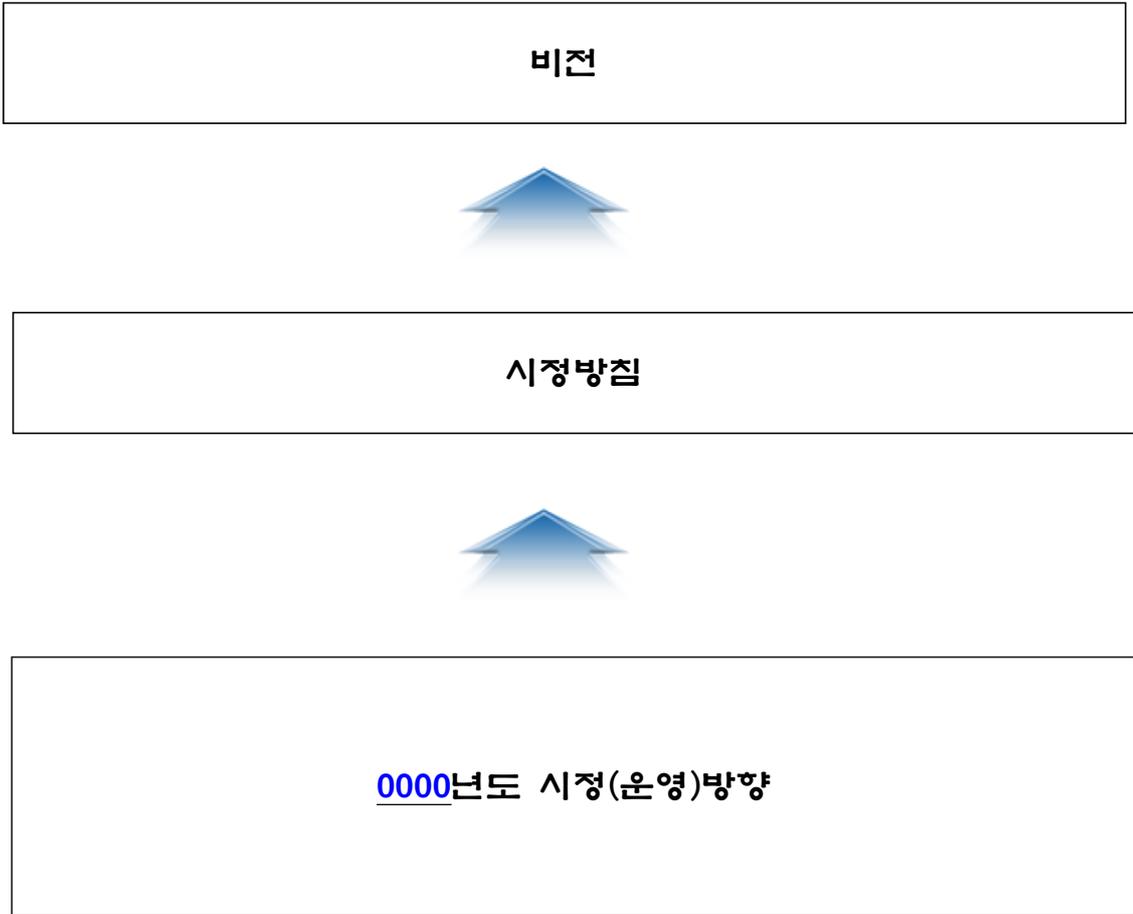
## 제2장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

- 1. 전략목표 I : 전략목표명<실국명> 기재
  - 1) 기본방향 및 정책사업목표 현황 .....
  - 2) 조직 및 인력현황 .....
  - 3) 예산현황 .....
  
- 2. 전략목표 II : 전략목표명<실국명> 기재
  - 1) 기본방향 및 정책사업목표 현황 .....
  - 2) 조직 및 인력현황 .....
  - 3) 예산현황 .....
  
- 3. 전략목표 III : 전략목표명<실국명> 기재
  - 1) 기본방향 및 정책사업목표 현황 .....
  - 2) 조직 및 인력현황 .....
  - 3) 예산현황 .....

< 붙임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및 예산현황

# 제1장 성과계획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

## 1. 비전 및 체계



## 2. 조직 및 인력 총괄현황

○

※ 해당 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력을 기재

### 3. 성과계획 총괄표

#### 가.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목표 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국	1	2	2	7	20,000	15,000	5,000

※ 성과계획은 정책사업 내용만 포함, 예산액은 전체 예산규모로 작성

< e-호조 집계방법 >

- 예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예산액도 포함한 총계

#### 나. 성과계획 및 자원비중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I.	I-1.	①		
	I-2.	②		
	I-3.	③		
	:	:		
II.	II-1.	①		
	II-2.	②		
	II-3.	③		
	:	:		
III.	III-1.	①		
	III-2.	②		
	III-3.	③		
	:	:		
:	:			

< e-호조 집계방법 >

- 예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합한 총계

## 4. 재정운용 방향

### 가. 재정전망

○

—

○

—

○

—

<작성요령>

※ 해당 자치단체의 0000년도 재정전망을 간략히 기재

### 나. 재정운용 방향

○

—

○

—

○

—

<작성요령>

※ 해당 자치단체의 0000년도 전체적인 재정운용방향을 기재

## 제2장

##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

전략목표 I	
[소관실국]	

### 1.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국 주무과에서 e-호조 사업구조화의 조직목표에서 입력</p>
--

###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I-1. 정책사업목표명			
I-2. 정책사업목표명			
I-3. 정책사업목표명			

※ 부서단위로 설정한 정책사업목표를 가져옴

※ 실·국의 전략목표는 자치단체의 전략목표와 일치

##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율	증감율
계		%		%		%
정책사업		%		%		%
행정운영경비		%		%		%
·인력운영비		%		%		%
	·기본경비	%		%		%
재무활동		%		%		%

(1) 주요내용

- 
- 
- 
- 
- 
- 
-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Y-2	Y-1	Y	Y+1		
① 성과지표명	핵심/일반		목표						
			실적						
①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Y : 예산편성 기준년도, (예시, 2018년 예산 편성시 Y=2018년, Y+1=2019년....)

\* 지표유형은 핵심지표와 일반지표로 구분하고 성과지표 가중치의 합은 1

- 핵심지표 : 사업의 궁극적 목적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주 지표

일반지표 : 사업의 목적달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보조지표

\*\* 핵심지표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핵심지표 가중치의 최소값이 일반지표의 최대값 보다 크고 핵심지표 가중치의 합이 60% 이상이 되도록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성과지표명

○

-

② 성과지표명

○

-

## < 작성요령 >

- ※ 정책사업목표를 직접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1개 이상 설정하되, 가급적 기관대표 성과지표를 적극 활용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성과를 종합적·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정책 대표 범위가 넓어야 함

\* ( 예시 : 환경녹지국 )

정책사업목표 · 단위사업	성과지표
(정책사업목표)선진 대기정책을 통해 도시공기를 맑게 한다	주요지역의 미세먼지농도
(단위사업)천연가스 자동차 민간보급 확대	

- 1) Y-1 실적은 추정치 표기
- 2) Y~Y+2 목표치는 다음 사항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 수행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
  -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 비교
  - 과거 추세치(과거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를 고려한 후, Y년도 추진할 구체적인 개선 사항 반영
- 3) Y~Y+2 목표치 산출근거는 과거 추세치 대비 ± 0% 조정, 유사사업·국제수준 중장기계획 대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외부기관의 객관적 자료 등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 개선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제시

※ 중장기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사업계획상 중장기 목표치에 대해 정량적 수치, 근거 및 달성 전략기재

- 4)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은 목표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산식 또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현 (측정산식, 비교근거, 만족도 조사의 척도 등)

예) 산식 : 성과지표가 취업률인 경우 : (취업자수 ÷ 졸업자수) × 100

방법 : 고객만족도인 경우 직접적인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리커트 5점 척도 측정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하향지표의 산식 명확화

하향지표 달성률 산식 =  $[1 - \{ (\text{실적치} - \text{목표치}) / \text{목표치} \}] * 100$

- 5)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는 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또는 실적확인 가능한 자료출처 기재

\* 성과측정시 유의사항은 지표의 성과달성도 확인시 고려할 사항 등을 기재

예) ○○생산량 달성률(%) → ○○환경 변화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심하므로 평가시 고려 필요

※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할 당해연도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작성(각 단위 사업에 관리번호를 표기)

※ 단위사업명은 예산체계상 단위사업명과 동일하여 그대로 기재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  
-

○ 주요내용

-  
-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Y-2결산	Y-1예산	Y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① 단위사업명			$a+b$ (전체단위사업비)	$a'+b'$ (전체단위사업비)	(전체세부사업개수)
▪ 세부사업명			$a$	$a'$	
▪ 세부사업명			$b$	$b'$	

※ Y : 예산편성 기준년도, (예시, 2018년 예산 편성시 Y=2018년, Y+1=2019년....)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1」 회계구분란에는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 표기

2」 비고란에는 해당 단위사업의 전체 세부사업 개수를 괄호안에 표기

※ 단위사업과 관련되는 예산사업을 모두 적시

- 각 단위사업에 해당되는 세부사업에 대해 반드시 사업명 및 금액 표기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1) 단위사업 하나로 구성된 경우

- 사업명 :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년 ~ ○○년 / 계속사업
- 지원형태 :
  - ※ 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용자 등
- 지원조건 :
  - ※ 보조율 등 재원분담, 용자조건, Matching 여부, 인력·조직 감축,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
- 시행주체 :

※ (2) 단위사업이 여러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아래 표로 작성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지원형태			
▪ 지원조건			
▪ 시행주체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지원형태			
▪ 지원조건			
▪ 시행주체			

<b>전략목표 II</b>	
<b>[소관실국]</b>	

### 1. 기본방향

- 
- 
- 

※ 국 주무과에서 e-호조 사업구조화의 조직목표에서 입력

###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II-1. 정책사업목표명			
II-2. 정책사업목표명			
II-3. 정책사업목표명			

※ 부서단위로 설정한 정책사업목표를 가져옴

※ 실·국의 전략목표는 자치단체의 전략목표와 일치

##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		%		%
정책사업		%		%		%
행정운영경비		%		%		%
·인력운영비		%		%		%
·기본경비		%		%		%
재무활동		%		%		%

(1) 주요내용

○

-

○

○

-

○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Y-2	Y-1	Y	Y+1		
① 성과지표명	핵심/일반		목표						
			실적						
①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Y : 예산편성 기준년도, (예시, 2018년 예산 편성시 Y=2018년, Y+1=2019년....)

\* 지표유형은 핵심지표와 일반지표로 구분하고 성과지표 가중치의 합은 1

- 핵심지표 : 사업의 궁극적 목적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주 지표

일반지표 : 사업의 목적달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보조지표

\*\* 핵심지표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핵심지표 가중치의 최소값이 일반지표의 최대값보다 크고 핵심지표 가중치의 합이 60% 이상이 되도록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성과지표명

○

-

② 성과지표명

○

-

※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할 당해연도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작성(각 단위 사업에 관리번호를 표기)

※ 단위사업명은 예산체계상 단위사업명과 동일하여 그대로 기재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 
- 

○ 주요내용

- 
-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Y-2결산	Y-1예산	Y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① 단위사업명			$a+b$ (전체 단위 사업비)	$a'+b'$ (전체 단위 사업비)	(전체세부사업 개수)
▪ 세부사업명			$a$	$a'$	
▪ 세부사업명			$b$	$b'$	

※ Y : 예산편성 기준년도, (예시, 2018년 예산 편성시 Y=2018년, Y+1=2019년....)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1) 회계구분란에는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 표기

2) 비고란에는 해당 단위사업의 전체 세부사업 개수를 괄호안에 표기

※ 단위사업과 관련되는 예산사업을 모두 적시

- 각 단위사업에 해당되는 세부사업에 대해 반드시 사업명 및 금액 표기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1) 단위사업 하나로 구성된 경우

○ 사업명 :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년 ~ ○○년 / 계속사업

○ 지원형태 :

※ 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용자 등

○ 지원조건 :

※ 보조율 등 재원분담, 용자조건, Matching 여부, 인력·조직 감축,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

○ 시행주체 :

※ (2) 단위사업이 여러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아래 표로 작성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지원형태			
▪ 지원조건			
▪ 시행주체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지원형태			
▪ 지원조건			
▪ 시행주체			





### 3.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3호)

【행정자치부예규 제63호】

(2016. 8. 31.개정)

#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예규)」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재정사업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지방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이 예규는 2016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 【 목 차 】

I. 평가제도 개요 / 1

II. 평가대상 및 일정 / 5

III. 평가지표별 평가표 및 측정방법 / 8

IV. 시행일 / 24

< 불 임 > 평가서 양식 및 작성요령

# I . 평가제도 개요

## ① 평가제도 개념 및 근거

- (개념)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내부의 사업수행 부서가 재정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국가는 2005년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시행 중

- (근거)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음

\*\* 행정자치부장관은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

## ② 평가지표

-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로 구분하여 11개 지표 사용
  - (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관리)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환류)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등

단계	평가항목	평 가지 표
계획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단계	평가항목	평 가지 표
관리 (30)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성과 환류 (50)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 ③ 평가절차 및 방법

- (절차) ① 투자사업은 자체평가 및 예산부서 확인·점검 등 순차적 진행
  - 평가계획 수립 → 사업부서 자체평가 → 평가결과 제출 → 확인·점검을 통해 평가점수 결정
- ② 행사성 사업은 민간위원회 사후평가 및 예산부서 확인·점검
  - 평가계획 수립 → 민간위원회 사후평가 → 평가결과 제출 → 확인·점검을 통해 평가점수 결정
- ③ 자체평가는 광역(실국 단위), 기초(실과 단위)의 해당 사업부서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전문연구기관의 지원 및 현장 실사 병행 가능
- ④ 행사성 사업은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후 평가 실시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축제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15명 이내. 민간인3/4이상) 등 기존 민간위원회 활용 가능
- ⑤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투자사업은 사업부서의 자체평가 절차 없이 예산부서에서 총괄하여 평가하고 이를 확정할 수 있음
- (방법) 사업부서 자체평가(투자사업) 또는 민간위원회 사후평가

(행사성사업)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실시

\* '우수'이상 사업비율 20%이내, '미흡'이하 사업비율 10%이상 의무화

- 다만, 행사성 사업 경비 5천만원 미만은 절대평가, 5천만원 이상은 상대평가
- 사업부서의 관대화 평가 경향을 완화하고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 적용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대상 사업수가 5개미만인 사업부서는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4 평가결과 산출 및 활용

○ (결과 산출)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 → 사업별로 5단계\*로 등급화

\* 5 등급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 (결과 활용) 평가결과 예산 반영시 사업특성\* 및 평가지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또는 유지
-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이상 삭감 원칙'을 적용

※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의무지출사업, 연도별 지출소요가 확정된 사업 등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 인정 가능

-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 '보통' 이상 등급 사업이라도 평가지표의 특성 및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 재검토,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 권고

(예시) 사업목적 불명확 → 사업 재검토,

유사·중복 → 사업 통폐합 또는 연계 강화

연례적 집행부진 → 불용실적을 감안한 예산삭감 등

## II. 평가대상 및 일정

### ① 대상사업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 평가대상 사업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설정
  - 투자사업 : 시·도 5억원 이상/ 시·군·구 2억원 이상
  - 행사성 사업 : 시·도 및 시·군·구 공연·축제 등
- 다만,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은 제외

### ② 추진일정

- 평가계획 수립 : ~2월
    - 각 자치단체별 자체 재정사업 세부 평가계획 수립
  - 평가대상 사업 확정 및 사업부서 자체평가 또는 민간위원회 사후평가 실시 : ~5월
    - 각 부서별 재정사업 평가대상 사업을 예산부서에 제출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제출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확정
    - 각 사업부서별로 자체 평가 또는 민간위원회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예산부서에 제출
  - 자체 평가결과 확인·점검 및 보고 : ~7월
    - 예산부서는 부서별로 제출받은 자체 또는 민간위원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 평가 결과 확정
  - 사업별 제도개선 권고사항 마련 및 각 사업부서 통보 : ~8월
  - 평가결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지자체) : ~12월
- ※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일정은 일부 조정 가능

### Ⅲ. 평가지표별 평가표 및 측정방법

#### ①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 배점	평가 결과
계획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2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소 계	10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소 계		10		
관리 (3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소 계	30	
성과 /환류 (50점)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10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	
		소 계	50	
계		100		

\* 평가지표 및 평가배점은 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②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 평가지표별 측정방법은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

### (1)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지표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2점)
측정방법	<input type="checkbox"/>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
측정기준	<p>①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p> <p>가.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상황/문제, 사업대상자, 이해관계자, 사업수요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경우</p> <p>나.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달성 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이 분명한 경우</p> <p>다. 재정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 재정지원 필요성 판단 기준</p> <p style="padding-left: 40px;">① 규제 등 정책수단을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p> <p style="padding-left: 40px;">②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는 등의 문제점 없이 민간부문에서 서비스 공급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p> <p style="padding-left: 40px;">③ 재정지원 없이도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p> <p>② ‘아니요’ 판단 기준</p> <p>가. 사업을 통해 해결해야할 특정상황/문제, 사업대상자, 이해관계자, 사업수요가 불명확한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 사업목적이 사업내용 및 범위에 비해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아야 함</p> <p>나.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간의 연계성이 미흡한 경우</p> <p>다. 재정지원 필요성이 없는 경우</p> <p>※ 의회, 감사원, 상급기관(중앙부처, 시도) 등 내·외부기관에서 사업목적 및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 지적내용에 대한 개선 또는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요’ 처리</p>
평가근거/자료	<input type="checkbox"/> 성과계획서, 사업설명자료 등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대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3점)
측정방법	<input type="checkbox"/> 사업이 공공 및 민간부문의 타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지를 확인(세부사업별로 모두 검토)
측정기준	<p>① ‘예’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 처리)</p> <p>가. 사업목적이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서로 다른 경우</p> <p>나. 사업목적이 유사하더라도 수혜대상이 다른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 수혜대상자가 중복되지 않고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나, 이 경우 사업시행주체를 별도로 두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해야 함</p> <p>다. 사업목적이 유사하더라도 유사사업간 협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실적이 있는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 의회, 감사원, 상급기관(중앙부처, 시도) 등 내·외부기관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평가결과, 유사·중복 지적이 있을 경우 지적사항을 적시하고 이를 해결한 구체적 실적을 제시해야 함</p> <p>② ‘아니요’ 판단 기준</p> <p>가. 사업목적, 수혜대상이 다른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경우</p> <p>나. 유사사업간 통합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이한 수행주체에 의해 사업이 추진된 경우</p> <p>다. 외부기관 및 내부평가에서 유사성이 지적된 사업에 대해 유사사업간 협의 등 조정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 사업부서에서는 유사·중복이 없다고 하였으나,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사업의 유사·중복을 지적한 사례가 있는 경우 3점 추가 감점</p> <p style="padding-left: 20px;">※ 평가대상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 중 일부가 ‘아니요’ 인 경우도 ‘아니요’ 로 처리</p>
평가근거/자료	<input type="checkbox"/> 중복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다른사업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유사사업간 조정절차를 통한 협의내용 등 관련 자료

평가지표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점)
측정방법	<input type="checkbox"/> 해당 사업의 내용 또는 구조, 추진방식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정한지를 확인(세부사업별로 모두 검토)
측정기준	<p>①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p> <p>가.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p> <p>* 개별 세부사업의 목적이 평가대상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p> <p>나. 사업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검토해 볼 때, 현재 사업추진 방식이 최선이라고 판단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lt; 사업방식 관련 검토사항(아래요소 모두 검토) &gt;</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① <b>재원분담</b> 가능성/적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사업의 경우 기초지자체 및 민간과의 재원분담 가능성 검토</li> </ul> <p>② <b>사업방식/조건</b> 변경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사업방식의 변경 필요 여부 검토</li> <li style="padding-left: 20px;">예) 직접사업 → 민간시행사업</li> <li>- 수혜대상 선정 및 지원조건 등 사업운영 방식의 적정성 검토</li> <li>* 투·융자심사 등 사전 타당성, 적합성 검토 여부</li> <li>* 시설장비구매 사업의 경우 구매결정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이행 여부 검토</li> </ul> <p>③ <b>사업추진주체</b> 변경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사업추진주체의 적정성 및 변경 필요 여부 검토</li> </ul> <p>④ <b>수요 예측</b>의 적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및 수혜대상규모 고려 시 예산규모의 적정성 검토</li> <li>* 출자·출연 사업의 경우 대상기관의 수지 등 경영상황을 점검하여 적정 사업비가 반영되었는지 검토</li> </ul> </div>

※ 사업의 성격에 따라 타당성검증, 지자체여건검토, 지원규모의 적정성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

※ 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제도 파악, IT신기술도입 타당성 등 관련 사항을 검토

**② ‘아니요’ 판단 기준**

가. 세부사업 중 단위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이 낮은 사업이 있는 경우

나. 효율성이 높은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 사업방식을 택했을 경우

※ 의회, 감사원, 상급기관(중앙부처, 시도) 등 내·외부기관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사업추진방식의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조치가 없는 경우 ‘아니요’ 처리

평가근거/  
자료

현행 사업방식의 효율성·합리성 입증 자료

\* 여타 사업방식과의 비교·분석 자료

## (2)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가지표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5점)
측정방법	<input type="checkbox"/>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지 확인
측정기준	<p><b>①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b></p> <p>가.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가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대표하며, 사업의 내용 및 수혜대상 범위를 포괄하도록 설정된 경우</li> </ul> <p>나.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또는 완공전 사업은 결과지표와 과정지표(공정률 등)를 병행설정</li> <li>* 공정률 지표의 측정산식은 ‘총사업비 대비 누적투자액’ 으로 설정함</li> <li>* 사업특성상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의 질(quality)을 측정하는 산출지표로 대체 가능</li> </ul> <p>예) 홍보사업 : 단순히 산출의 양을 측정하는 ‘홍보건수’ 가 아니라 산출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인 ‘홍보물에 대한 인지도’ 를 성과지표로 제시</p> <p>다. 성과지표의 정의·측정 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산식이 비율인 경우 분자·분모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측정산식이 없는 경우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li> <li>* 성과지표가 만족도인 경우 만족도 조사시 조사주체, 설문대상, 설문항목, 표본구성 등 조사방법이 적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함</li> </ul> <p><b>② ‘아니요’ 판단 기준</b></p> <p>가.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의 일부만을 반영하여 설정된 경우</p> <p>나.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성과지표로 설정된 경우</p> <p>다. 성과지표가 투입이나 산출물의 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p> <p>라.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애매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경우</p> <p>마. 산출물의 질을 측정하는 산출지표 또는 정량적 결과지표를 병행하여 설정하지 않고 만족도 등 정성적 지표만을 제시한 경우</p>
평가근거/자료	<input type="checkbox"/>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간에 연계성이 있음을 입증 <input type="checkbox"/>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성과계획서 <input type="checkbox"/> 만족도 조사 지표의 경우 만족도조사 설문지 제출

평가지표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5점)
측정방법	<input type="checkbox"/>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가 사업 성과목표를 달성하거나 달성하는 추세에 맞춰 합리적인 수준인지 확인
측정기준	<p><b>①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b></p> <p>가.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에 설정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수정평가에 한해서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당해 연도 성과계획서에 반영한 경우는 사전 설정한 것으로 간주</li> </ul> <p>나.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함</li> <li>*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은 과거 추세치 및 유사사업간 비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설정</li> </ul> <p>다.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해야 함</li> </ul> <p><b>② ‘아니요’ 판단 기준</b></p> <p>가.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후에 임의변경 설정한 경우</p> <p>나.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과거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li> </ul> <p>다. 과거 사업추진과정 상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지표에 대한 목표치의 경우, 유사사업 또는 과거 추세치 등을 반영하여 기준점으로 삼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으나, 해당 기준점을 그대로 목표치로 설정해서는 안됨</li> </ul> <p>라.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p>

▪ 2-1이 '아니요'일 경우, 2-2도 '아니요' 처리

※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 성과지표별로 '예', '아니요'를 판단한 후 가중치를 고려하여 점수 합산

$$\text{점수} = (\text{"예"로 인정된 성과지표의 가중치의 합}) \times 5$$

평가근거  
/자료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자료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포함)
-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성과계획서

### (3) 사업관리의 적정성

평가지표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15점)										
측정방법	<p><input type="checkbox"/>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p> <p style="text-align: center;">&lt; 4단계 배점 방법 &gt;</p> <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답변</td> <td>“아니요”</td> <td>“어느 정도”</td> <td>“상당한 정도”</td> <td>“예”</td> </tr> <tr> <td>배점</td> <td>0</td> <td>5</td> <td>10</td> <td>15</td> </tr> </table>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0	5	10	15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0	5	10	15							
측정기준	<p><b>① ‘예’ 판단 기준</b></p> <p>가. 매년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정상 집행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고, 집행시기 및 집행대상이 모두 적정한 경우</li> <li>*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계획, 조직개편,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용액, 소액의 집행잔액,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용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li> </ul> <p><b>②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b></p> <p>가. 집행률은 양호하나,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p> <p>나. 집행률이 저조하나, 제도개선 노력 등을 통해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경우</p> <p><b>③ ‘어느 정도’ 판단 기준</b></p> <p>가. 집행률은 양호하나, 적기 집행이 중요한 사업(예: 난방비 지원사업 등) 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집행된 경우</p> <p>나. 집행률이 저조하나, 집행률 제고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p> <p>다. 사업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였거나 회계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 감사원 등 내·외부지적이 발생하여 조치한 경우에도 ‘어느 정도’로 처리</li> </ul>										

④ '아니요' 판단 기준

- 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예산을 전용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나. 집행률 부진에 대해 별도의 개선노력이 없는 경우
- 다. 전년 대비 집행률이 연속적으로 하락한 경우
- 라. 사업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회계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

평가근거  
/자료

- e-호조시스템 상에 기록되어 있는 예산집행현황 자료
- 회계검사보고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등

평가지표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5점)

측정방법

사업추진 주체가 사업의 관리 및 집행에 대해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0	2.5	5

측정기준

**① ‘예’ 판단 기준**

가. 사업목적 달성 및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고 운영되는 경우

\*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준(아래 요건 모두 충족)

- ① 최소한 1년에 1번 이상 실시
- ② 단순 집행실적 집계 및 산출량 파악과 같은 진도 점검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
- ③ 당해 사업연도내에 문제점 발굴 및 환류 실적이 최소 1회 이상 있거나, 환류를 위한 검토과정을 거친 경우

※ 용자, 투자의 경우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자 관리·감독, 용자 회수율, 총사업비 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함

**② ‘어느 정도’ 판단 기준**

가. 사업부서 또는 사업시행자 중 일방의 모니터링 체계 및 운영실적은 양호하나, 나머지 사업주체의 모니터링 체계 및 운영실적이 부실(부정기적)할 경우

나.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였으나, 비중이 낮은 일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및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③ ‘아니요’ 판단 기준

가. 사업부서 및 사업시행자 모두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지 않거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나. 사업 성과 제고와 관련이 높은 핵심 사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및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평가근거/  
자료

-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 자료
-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실적 자료

평가지표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10점)

측정방법

사업추진과정에서 환경변화, 예기치 않은 문제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였는지 확인하여 점수부여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0	5	10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절감 및 사업 효율성 제고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해당 실적이 있을 경우 가점(3점)부여

측정기준

**① ‘예’ 판단 기준 (모두 해당해야 ‘예’ 처리)**

가. 의회, 감사원, 중앙부처 및 시도 등 내·외부기관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적절히 대응·해결한 경우

- \* 의회, 시·도, 감사원, 외부기관 업무평가 등 지적사항 개선실적 등

나. 사업추진 과정상 발생한 문제점을 적절히 대응·해결한 경우

- \* 집행 과정 중 발생한 민원, 갈등 대응 또는 해결 실적
- \* 모니터링 체계 운영을 통해 발굴된 문제점의 대응·해결실적

**② ‘어느 정도’ 판단 기준**

가. 외부 지적, 집행 과정상 발생한 문제점 중 일부 문제점에 대한 대응·해결 실적이 미흡한 경우

- \* 내·외부 지적 및 집행과정상 문제점은 모두 적절히 대응·해결하였으나, 3-2가 ‘아니요’로 판명되어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문제점 해결실적이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

**③ ‘아니요’ 판단 기준**

가. 집행과정상 발생한 환경변화, 문제점, 외부 지적사항 등에 대해 대응하지 않거나, 대응실적이 부적절하여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 의회·감사원·중앙부처·시도 등 외부기관에서 문제점 대응실적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사례가 있을 경우

나. 집행과정상 발생한 환경변화, 문제점, 외부 지적사항 등에 대해 대응하였으나, 해당 문제점의 개선이 전혀 없을 경우

※ 다음 사업 유형의 경우 예시와 같은 문제점 해결 실적을 필히 제시해야 함  
- 출연·출자 사업은 사업자의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사용에 대한 통제수단에 대한 점검실적, 용자사업은 용자 및 자금회수계획에 대응한 실적, 투자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과 다른 시공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실적 및 총 사업비 관리와 관련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조치실적

예산절감 또는 사업 효율성을 제고 노력 판단기준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점 3점 부여)

가. 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고 그 결과 비용을 절감하고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예) 기존에 외부위탁 또는 용역 등 별도의 비용을 들여 수행하던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다음해 예산 편성시 해당 비용만큼 감액하여 편성한 경우

\* 효과에 대한 입증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그 수치가 명확히 측정되어야 함

\* 감사원, 중앙부처, 시·도 등 상급기관 및 지방의회 등 외부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사업방식 등을 개선한 경우는 당연 조치사항이므로 인정대상 아님

나.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 받기로 확정된 경우

다. 공신력 있는 타기관에서 해당 사업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실적이 있거나 해당 내용으로 포상실적이 있는 경우

평가근거  
/자료

-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발굴된 문제점과 해결 실적
- 시행과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해결 실적
- 구체적인 비용절감 방안/효과 관련 자료
- 예산성과금 인정 자료

#### (4)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평가지표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30점)										
측정방법	<p><input type="checkbox"/> 합리적으로 제시된 목표치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p> <p style="text-align: center;">&lt; 4단계 배점 방법 &gt;</p> <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답변</td> <td>‘아니요’</td> <td>‘어느 정도’</td> <td>‘상당한 정도’</td> <td>‘예’</td> </tr> <tr> <td>배점</td> <td>0</td> <td>10</td> <td>20</td> <td>30</td> </tr> </table> <p><input type="checkbox"/> 성과계획서 상 관리과제가 포함된 상위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5점 감점</p>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0	10	20	30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0	10	20	30							
측정기준	<p><b>① ‘예’ 판단 기준</b></p> <p>가. 2-2에서 ‘예’이면서 모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 목표달성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100%로 계산</p> <p><b>②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b></p> <p>가. 2-2에서 ‘예’이면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상당한 정도로 달성한 경우</p> <p>나. 2-2에서 ‘예’이면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상당한 정도’로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이 진행 중인 사업 등으로서 해당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 달성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li> <li>▪ 사업추진과정의 불가피한 문제로 당해 정상집행이 안된 경우</li> <li>▪ 외부요인으로 인해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경우</li> </ul> <p>다. 2-2에서 ‘예’이나, 외부요인으로 인해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미달성하였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상당한 정도’로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사업을 관리하고 외부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li> </ul> <p>라. 2-2에서 ‘아니요’이나, 사업평가 결과 또는 그 밖의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사업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p>										

**③ '어느 정도' 판단 기준**

- 가. 2-2에서 '예'이면서 제시한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경우
- 나. 2-2에서 '예'이면서 모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 하였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어느 정도'로 인정
  - 통계 수치의 신뢰성이 낮거나 검증이 곤란한 경우
  - 연례적으로 실적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경우
- 다. 2-2에서 '아니요'이나, 목표치를 상당한 정도 달성한 경우

**④ '아니요' 판단 기준**

- 가. 그 밖의 모든 경우
- 나. 달성도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한 경우

※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 성과지표별로 '예', '상당한 정도', '어느 정도', '아니요'를 판단한 후 가중치를 고려하여 점수 합산

$$\text{점수} = \text{①} + \text{②} + \text{③}$$

① ('예'로 인정된 성과지표의 가중치의 합) × 30

② ('상당한 정도'로 인정된 성과지표의 가중치의 합) × 20

③ ('어느 정도'로 인정된 성과지표의 가중치의 합) × 10

평가근거  
/자료

성과보고서 등,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및 데이터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평가지표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10점)								
측정방법	<input type="checkbox"/> 사업추진을 통한 사업효과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여 3단계로 점수 부여 < 3단계 배점 방법 > <table border="0" style="margin-left: 40px;"> <tr> <td>답변</td> <td>“아니요”</td> <td>“어느 정도”</td> <td>“예”</td> </tr> <tr> <td>배점</td> <td>0</td> <td>5</td> <td>10</td> </tr> </table>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0	5	10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0	5	10						
측정기준	<p><b>① ‘예’ 판단 기준</b></p> <p>가. 외부기관 또는 내부의 독립적 평가주체에 의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사업평가 결과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여부를 입증한 경우</p> <p><b>② ‘어느 정도’ 판단 기준</b></p> <p>가.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효과성 여부를 입증하였으나 사업평가 주체의 객관성이 미흡한 경우</p> <p>나. 객관적 평가가 실시되었으나 사업평가 방법론이 부적절하여 사업효과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p> <p>* 객관적 평가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제시하였으나 그 효과가 사실상 사업 운영 측면의 우수성만을 제시한 경우도 포함</p> <p>다. 객관적 사업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평가대상 사업이 전체가 아닌 일부 사업이 누락되어 실시된 경우</p> <p><b>③ ‘아니요’ 판단 기준</b></p> <p>가. 사업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p> <p>나. 사업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지침이 요구하는 객관성, 방법론, 종합성의 적절성이 모두 충족되지 못한 경우</p> <p>※ 소액사업(10억 이하), 신규사업, 미완료사업(시설물 건립 등)과 같이 가시적인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업의 경우는 ‘적용불가’ 처리</p> <p>※ 적용불가시 동 문항 배점인 10점은 (4-1)에 7.5점, (4-3)에 2.5점씩 배분</p>								
평가근거 / 자료	<input type="checkbox"/> 사업평가 결과 보고서								

## < 참고 1 > 예산집행실적 기준

$$\text{① 집행률(\%)} = \frac{\text{사업비 집행실적}}{\text{사업비 현액}^*} \times 100$$

\* 자체계획에 따른 절감액은 제외

- (실)집행실적은 e-호조시스템 집계 금액
- 사업특성에 따라 자치단체 외로 이전(출연금 등)되어 집행되는 경우에는 실집행액을 집행실적에 반영하여 평가

## < 참고 2 > 성과달성도 배점 기준

배점 단계	성과지표 달성치
예	100% 이상
상당한 정도	90 ~ 100%
어느 정도	80 ~ 90%
아니요	80%미만

\* 확인·점검 과정에서 부서의 업무 및 사업특성(외부요인으로 인한 영향, 성과달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배점기준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평가지표	<b>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점)</b>								
측정방법	<input type="checkbox"/> 자체평가 또는 사업평가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3단계로 점수부여 < 3단계 배점 방법 > <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답변</td> <td>“아니요”</td> <td>“어느 정도”</td> <td>“예”</td> </tr> <tr> <td>배점</td> <td>0</td> <td>5</td> <td>10</td> </tr> </table>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0	5	10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0	5	10						
측정방법	<input type="checkbox"/> 자체평가 또는 사업평가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3단계로 점수부여 < 3단계 배점 방법 > <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답변</td> <td>“아니요”</td> <td>“어느 정도”</td> <td>“예”</td> </tr> <tr> <td>배점</td> <td>0</td> <td>5</td> <td>10</td> </tr> </table>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0	5	10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0	5	10						

평가지표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점)
측정기준	<p>① '예' 판단 기준(아래요건을 모두 충족)</p> <p>가. 자체평가 및 사업평가 결과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사업방식 개선, 법령·지침 개정, 관련제도 보완 등 제도개선 계획 수립 및 개선 실적이 있는 경우</p> <p>나. 자체 재정평가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제도개선 계획 수립 및 개선 실적이 있는 경우</p> <p>다. 의회, 감사원, 중앙부처 및 시도 등 외부에서 지적한 사항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제도개선 계획 수립 및 개선 실적이 있는 경우</p> <p>② '어느 정도' 판단 기준</p> <p>가. '예' 판단 기준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 중에서 일부 문제에 대해서만 제도개선 실적을 마련한 경우</p> <p>③ '아니요' 판단 기준</p> <p>가. '예' 판단 기준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개선 실적이 없는 경우</p>
평가근거 /자료	<p><input type="checkbox"/>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도출한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의 자료</p> <p><input type="checkbox"/> 사업추진 개선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p>

## IV. 시행일

---

본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 2017년도 중 실시하는 재정사업 평가는 2016년도 추진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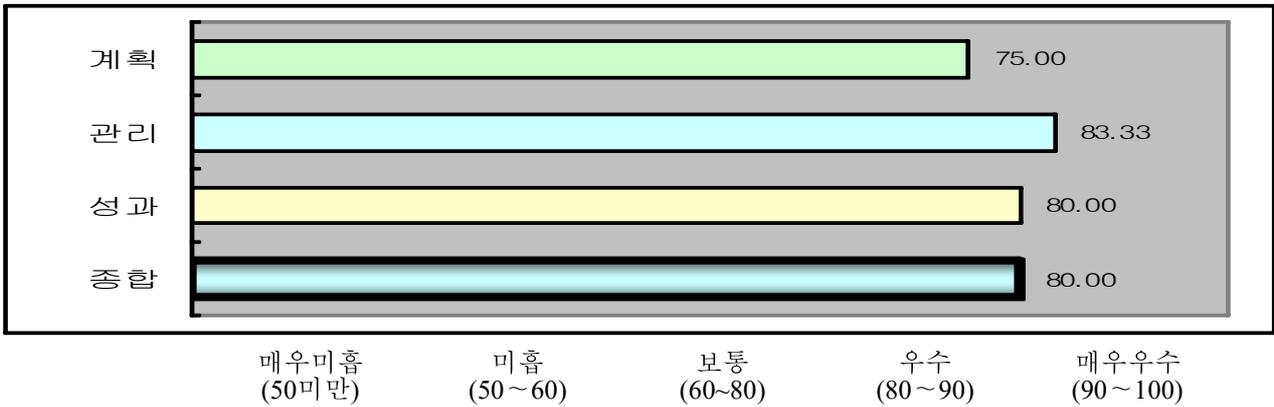
## 붙임 평가서 양식 및 작성요령(예시)

\* 평가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 1. 000사업(회계명, 사업유형, 평가결과)

\* 담당자 : 00국장(000), 00과장(000), 주무관(000), 전화번호 :

#### 1 평가종합



#### 2 예산현황(억원)

전전년도(결산)	전년도(결산)	해당연도(예산)

\* 예) 2016년에 실시하는 평가의 경우 : 전전년도(2014), 전년도(2015), 해당연도(2016)

#### 3 성과계획

성과목표 :

성과지표

○ A 지표(단위)	'11	'12	'13	'14	'15	'16
▪ 계획						
▪ 달성						
○ B 지표(단위)						
▪ 계획						
▪ 달성						

\* 과거 계획/달성 모두 기재

#### 4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게 구체적으로 명시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년 ~ ○○년
- 총사업비 :        억원(전년까지 기 투자액\* : ○○억원)
  - \* 기 투자액은 결산(집행)기준으로 작성
- 사업규모 :
  - ※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
- 지원대상 :
  - ※ 사업 수행을 통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대상을 기재
- 지원형태 :
  - ※ 직접수행, 출연(출자), 융자 등
- 지원조건 :
  - ※ 보조율 등 채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인력조직,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 사업시행 주체 :
- 세부내역
  - ※ <'15년도 예산요구안 세부사업 설명자료>의 사업별 세부내역 제시

구 분	'14 예산	'15 예산 (A)	'16 예산 (B)	증 감 (B-A)	
					%
□ 사업명					
▪ 세부사업 1					
▪ 세부사업 2					
:					
□ 세출예산비목					
○ 일반운영비(201)					
○ 연구개발비(207)					
○ 국내여비(202)					
:					

사업추진 절차 (※ 필요시 작성)

※ 사업추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가급적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1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

'15 ~ '19까지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13년까지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이후

참고 사항 (※ 필요시 작성)

※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현황·통계 등을 작성